

월간

# 재정포럼

2017. February\_Vol.248

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권두칼럼

재정건전화의 이상과 현실/ 이원희

## 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책적 교훈/ 홍범교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고/ 윤성주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2016년 소득신고 기한 및 주요 세법개정내용 발표 외

#### 권두칼럼

재정건전화의 이상과 현실 · 이원희 ..... 02

#### 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책적 교훈 · 홍범교 ..... 06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고 · 윤성주 ..... 29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2016년 소득신고 기한 및 주요 세법개정내용 발표 외 ..... 44

#### 정책흐름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추진 ..... 75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76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82



## 재정건전화의 이상과 현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전직 예산실장이나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의 모임인 경우회와 예우회에서 2014년 『한국의 재정 60년』을 발간했다. 정치권력이 정돈되지 못한 혼돈 속에서 한국 관료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재정정책과 재정관리의 의미 있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회고록이다. 건국부터 70년대 개발기, 80년대 발전기의 과정을 소개한 이 책의 부제가 ‘건전재정의 길’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재정당국은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고,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의 재정이 국가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그나마 성장기 경제 관료들이 ‘세입 내 세출’의 원칙을 통해 지출을 확대하되 방만 지출을 경계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별개로 1999년 경실련에서는 예산감시위원회를 조직하여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재정건전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낭비적 지출을 감시하는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각 부처에 예산낭비 감시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어 제도화시키는 노력을 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보장하는 법제화를 하기도 했다.

### 재정건전화법 발의와 내용

재정건전화를 위한 이러한 긴 노정의 연장에서 2016년에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재정 관련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에 비해 특별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법은 재정규율, pay go 원칙, 거버넌스 재설계, 장기 재정 전망 예측 등 매우 적극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첫째, 재정규율과 관련하여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 대비 45% 이내로 관리

하고, 재정관리수지를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하로 관리한다. 둘째, pay go 원칙은 지출이 수입을 수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동 법안은 정부, 국회의원 등이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의 구조조정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전문가와 각 부장관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협의회를 두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넷째,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의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추계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국회에서 논의가 쉽지 않은 재정건전화법

‘재정건전화법’은 기획재정부의 매우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제출 이후에 추진력과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 체제인 한국의 경제 체제에서 재정건전화는 이상적으로 중요하다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금기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정건전화가 구현되는 현실적 조건과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이다. 재정건전화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 요인이 된다. 특정 모수를 매개로 하여 재정 지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사업 결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효과가 있다. 국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숙성하면서 국가 권력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이동의 과정에서 국회는 자칫 ‘재정건전화법’이 자승자박의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이 여기에 판정을 해야 한다. 국회가 국회의 권력으로 자신을 자제시키지 못할 때,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한 국가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법안에 우려되는 조항이 있기도 하다. 첫째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

.....

**재정건전화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 요인이 된다.  
특정 모수를 매개로 하여  
재정 지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사업 결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효과가 있다.**

.....

.....  
**위기를 정확하게 경고하는  
 데이터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칫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반복되는 효과를  
 유발하여 위기 불감증을  
 가져올 수 있다.**  
 .....

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그것이다. 똑같은 조항이 「국가재정법」에도 있다. 「국가재정법」 제5장의 제목이 ‘재정건전화’이고 여기에 유사한 조항들이 있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나 세계잉여금 처리를 통제하면서 예외적인 조항으로 꼭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의 요건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배경이 되었다.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재정건전화도 통합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효성이 우려된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자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화를 유지할 수 있는 중앙재정당국의 지혜가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들을 정리하다보면, 재정건전화가 너무나 당연한 주제인 듯하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를 정확하게 경고하는 데이터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칫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반복되는 효과를 유발하여 위기 불감증을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재정 지출과 관련하여 과학적 예측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연금재정, 보험재정에서의 위기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한다. 인구 구조, 세입 기반 변화, 지출 소요를 정교한 모델에 근거하여 국책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서 각자 예측하고 이에 근거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재정건전화와 관련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새로운 과제이며,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책적 교훈**  
홍범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고**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책적 교훈\*

### I. 도입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ong@kipf.re.kr)

2003년 거시경제학의 대가인 미국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 교수가 전미경제학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경기변동에 대한 고민은 끝났다고 선언한 지, 채 5년이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1930년대 대공황의 재현이 아닌가 할 만큼 심각한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맞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정책당국은 통화팽창과 재정확대 정책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금리인하라는 전통적인 수단을 통한 금융완화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마이너스 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 Policy)이라는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위기를 맞이하여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의 국가채무가 이미 GDP의 10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여유를 찾기 힘든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로존에서는 단일 통화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별 고유 정책수단을 상실한 가운데, 중앙집권적인 재정정책의 실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엄연히 국가와 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합중국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위기의 수습과 경기 회복을 위하여

\* 본고는 저자가 공동연구로 수행한 '홍범교·오종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재정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의 일부를 발췌·보완한 것이다.

사용된 비전통적인 경제정책 수단들을 살펴보고, 그 경험을 통하여 정책적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케인스가 새로운 거시정책이론을 제시한 이래 다양한 경제이론들이 전개되었고, 1980년대 이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까지의 안정기인 Great Moderation 시대를 거치면서 극심한 경기 변동은 이제 지나간 일이라는 경제학계의 자신감은 앞서 루카스 교수의 취임연설에서 최고조에 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화와 경기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수단, 특히 통화정책에서 사용되어 오던 전통적인 정책수단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그 바탕이 되는 경제이론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반성과 토론이 국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론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명망 있는 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까지 금융위기를 통하여 부각된 특징적인 정책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금융위기를 통하여 부각된  
특징적인 정책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 II. 금융위기의 전개와 비전통적 정책수단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정책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인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었다. 물론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금융완화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도 시행하였으나, 이 두 가지 정책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1. 양적완화<sup>1)</sup>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은 정책금리를 2007년 초반 5%대에서 동년 9월 4.75%로 내린 이후 9차례에 걸쳐 추가 인하하여, 2008년 12월부터 0~0.25%의 제로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초반에 유동성공급 및 정책금리 인하에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미국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 정책을 3차례에 걸쳐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1차 양적완화 정책(QE1)은 2008년 12월에 6,00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계획으로 시작되어, 2009년 3월에는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채권매입 결정으로 이어졌다. 1차 양적완화로 미국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1)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유럽중앙은행의 대응에 대해서는 강유덕(2014), 이승호·강현주(2016) 등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이하는 주로 이들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정책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인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었다.  
”

시작함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경기가 다시 살아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은 쉽게 종료되지 않았다.

2010년 11월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011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6,000억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현재 연방준비위원회(이하 연준) 자산의 만기 회수분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계속하기로 결정함으로써 2차 양적완화 정책(QE2)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차 양적완화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단기국채를 장기국채로 대체하는 만기연장프로그램(Operation Twist)을 통하여 장기금리의 인하를 시도하였다.

3차 양적완화 정책(QE3)은 2012년 9월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고용상황이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 400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제로금리는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이어 동년 12월에는 주택저당증권 외 장기국채를 추가적으로 매달 450억달러씩 매입하기로 하였다. 미국에서 고용상황 등 경제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연준은 2013년 12월에 양적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테이퍼링(QE tapering)을 발표하였다. FOMC에서 매월 850억달러의 자산매입 규모를 2014년 1월

부터 750억달러로 감소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어서 2014년 1월이 되자 양적완화 규모를 다시 100억달러 축소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자산매입 규모는 동년 2월부터 주택저당증권 300억달러, 국채 350억달러로 축소되었다. 2014년 10월에 연준은 2012년 9월부터 시행한 자산매입을 마침내 중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양적완화를 종료하였다.

유럽의 경우에도 당시 미국의 모기지채권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던 유럽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존하게 되었고, 부동산 시장 버블의 급속한 붕괴로 잠재되어 있던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로 부실대출이 급증하였다.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과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유럽 주요국의 수출 급감현상도 발생함으로써 유럽은 2008년 2/4분기 이래 지속적으로 경기가 수축되어 2009년에는 -4.4% 성장이라는 전후 최대의 경기침체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2008년 10월 이후 2009년 5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3.25%p 인하하여 1%까지 낮추었다.([그림 1] 참조) 또한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금리인하만으로 위기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였다.

ECB의 다양한 정책수단에 의하여 2009년부터 금융시장은 점차적으로 안정 국면을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ECB는 불필요한 비전통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비전통적 조치들과 낮은 금리가 과도하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은행과 가계가 지나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전반적인 경제성장, 자산 가치 안정성, 그리고 나아가 물가 안정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중 ECB의 기준금리



출처: 강유덕(2014),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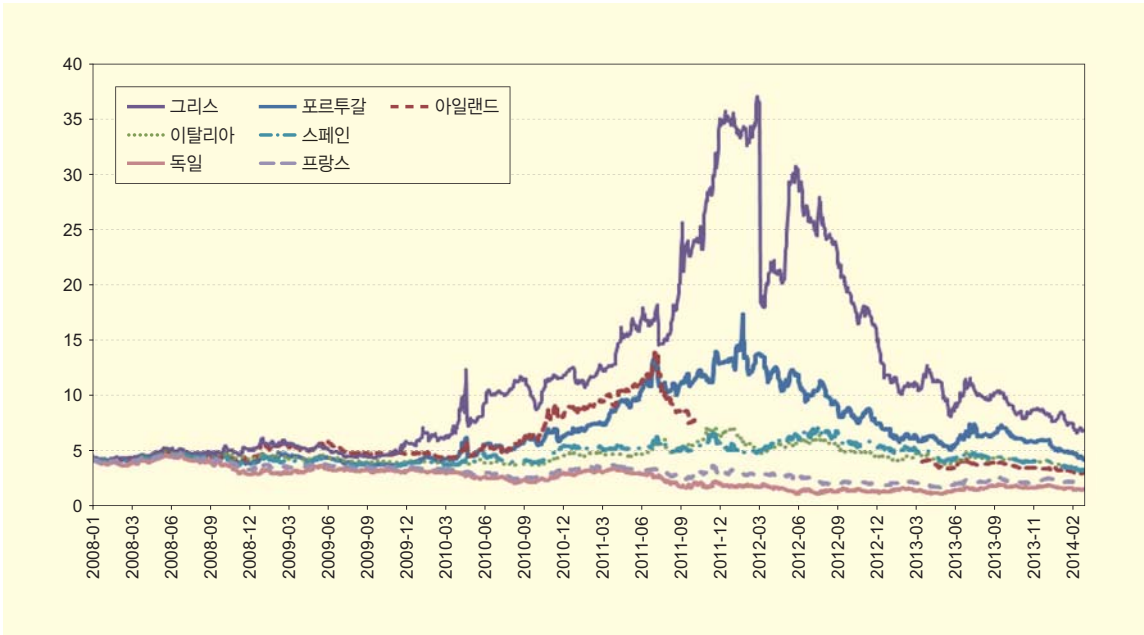
그러나 2010년 초에 유로지역 일부 국가들의 재정악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채시장에 긴장감이 다시 조성되었으며, 2011년 말부터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 위기가 확산되었다. [그림 2]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남유럽국가들과 아일랜드의 국채금리를 독일의 국채금리와 비교한 그림으로 이들 나라의 재정위기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그리스 구제금융(2010년 1~5월)에 이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구제금융(2010년 11월~2011년 4월)이 실시되고, 재정상황이 불안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급등하였으며(2011년 7~12월) 경기 침체는 다시 확산되었다.

“  
2010년 초에 유로지역 일부 국가들의  
재정악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채시장에 긴장감이 다시 조성되었으며,  
2011년 말부터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  
위기가 확산되었다.

”

[그림 2]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금리 변화

(단위: 10년 만기, 연간 %)



출처: 강유덕(2014), p. 82.

유럽의 재정위기가 대두된 가운데 ECB는 국채 매입프로그램(Securities Markets Programme; SMP)의 착수와 함께 금융위기 안정화에 따라 중단되었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재가동하여 장기 대출프로그램(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 LTRO),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OMT) 등을 발표하였다.

국채매입프로그램 조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유럽 여러 국가의 금융부실 우려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기미가 보이자, ECB는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장기대출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2011년 12월에 LTRO를 통해 4,890억유로를 공급하였다. 3년 만기 1% 금리 LTRO에 총 523개의 유로존 금융기관이 신청하였

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행에는 각각 1,100억유로와 800억유로가 대출되었다. 2012년 2월에는 800여개의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총 5,295억유로 규모의 2차 LTRO가 실행되었다. LTRO와 함께 ECB는 시중은행들에 대한 지급준비금 비율을 기존 2%에서 1%로 낮추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였다.

장기대출프로그램으로 인해 유로존 국채 및 주식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러 국가의 재정위기와 긴축으로 인해 유로존은 다시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자 2012년 9월에 무제한 국채매입프로그램(OMT)을 발표하였다. OMT는 유로존 위기 발생 시 ECB가 위기국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CB의 발표에 따르면 OMT는 SMP와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복원과 유로존 국채시장의 단일성 유지를 목표로

한다.<sup>2)</sup> OMT가 SMP와 차별화되는 특징으로는 매입 대상 국채를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의 국채와 잔여만기 1~3년물로 제한하고, 기한 제한 없이 무제한 매입이 가능하며, 구제금융 시 엄격한 구제금융 조건을 부과한다는 점 등에 있다. OMT는 미연준의 양적완화와 외형상 유사하나, 불태화 조치를 병행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한다는 것과 매입 대상 국채를 잔여만기 1~3년물로 한정하여 재정의 화폐화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유로지역의 경기부진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자 ECB는 경기회복(2% 인플레이션 목표)을 목표로 마이너스 금리 및 추가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 APP) 등의 조치를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다. 2014년 6월 11일부터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 금리(deposit facility rate)를 -0.1%로 적용하기로 하였다.<sup>3)</sup> 2014년 10월에는 향후 2년간 자산담보증권 매입프로그램(Asset-Backed Securities Purchase Programme)과 유로표시 커버드본드 매입프로그램(Covered-Bond Purchase Programme)을 실행하였다.<sup>4)</sup> 2015년 1월에는 기존 APP를 확대하여 유로지역 중앙은행과 관련 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2016년 9월까지 매달 600억유로에 이르는 자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sup>5)</sup> 2016년 3월에는 기존

APP에 2016년 2/4분기부터 비금융기업의 사채를 매입대상으로 하는 추가 매입 프로그램(corporate sector purchase programme)을 도입하였고, 매달 매입 자산 금액도 800억유로로 상향 조정하였다.<sup>6)</sup>

## 2. 마이너스 금리 정책(NIRP)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유로지역 주변 국가는 ECB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유로화 가치하락으로 자국통화의 평가상승 압력 및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다.<sup>7)</sup> 이들 유로지역 주변국들은 유로지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 변화에 따라 자국통화 가치가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는 유로화 대비 고정환율제 특성, 스웨덴은 북유럽 경제 강국 특성, 스위스는 안전자산 특성 등으로 인해 급격한 외화유입에 따른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경험하였다. 이들 나라는 각각 이러한 이유로 덴마크(2012년 7월)를 시작으로, 스웨덴(2014년 7월), 스위스(2014년 12월)가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였다.<sup>8)</sup> 특히 스웨덴과 스위스는 ECB가 2014년 6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에 따른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2) ECB press release, 6 September 2014.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12/html/pr120906\\_1.en.html](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12/html/pr120906_1.en.html))

3) ECB press release, 5 June 2014.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14/html/pr140605\\_3.en.html](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14/html/pr140605_3.en.html))

4) ECB press release, 2 October 2014.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14/html/pr141002\\_1.en.html](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14/html/pr141002_1.en.html))

5) ECB press release, 22 January 2015.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15/html/pr150122\\_1.en.html](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15/html/pr150122_1.e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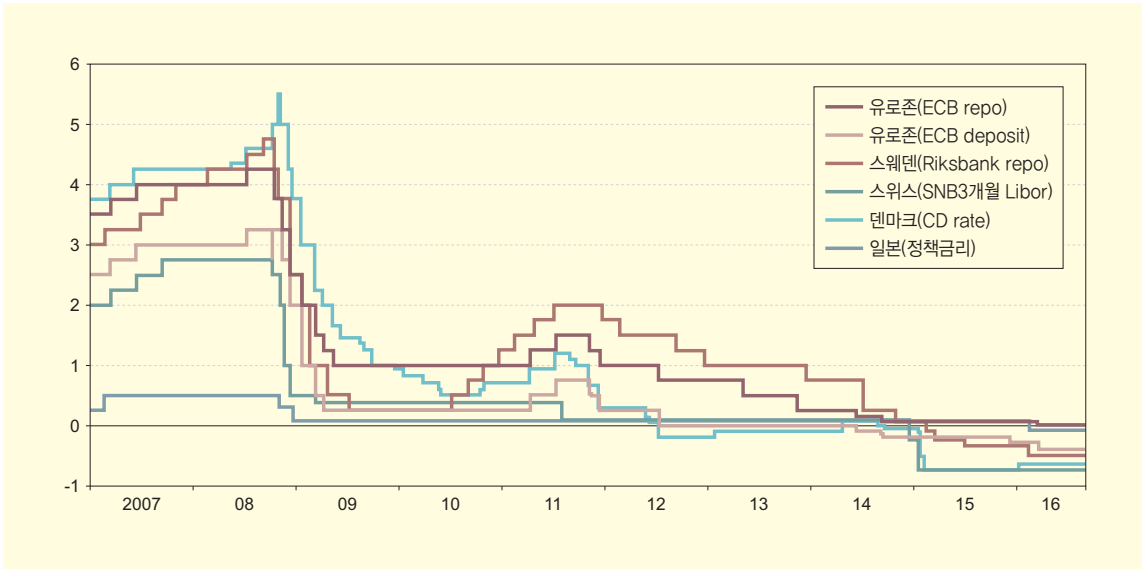
6) ECB press release, 10 March 2016.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16/html/pr160310\\_2.en.html](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16/html/pr160310_2.en.html))

7) 임형석(2016), pp. 3~4.

8) World Bank(2015), pp. 13~14.

[그림 3]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현황

(단위: %)



원자료: Thomson Reuters Dalastream

출처: <https://www.ft.com/content/44051924-6f9f-11e6-a0c9-1365ce54b926>

ECB와 유럽 국가 이외에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2016년 2월부터 채택하였다. 아베노믹스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성 확대정책으로 다양한 양적·질적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하였지만, 기대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일본 은행이 국채매입을 통해 신규 공급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일본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 중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 -0.1%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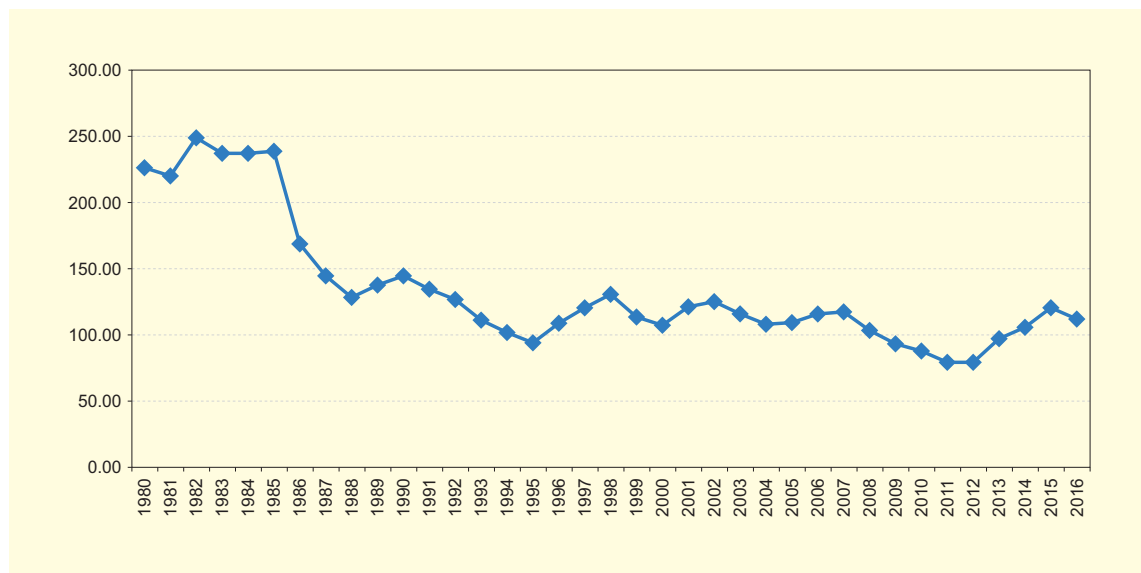
일본은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을 통해 디플레이션 위험을 축소하고, 엔화가치 평가절하를 유도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며,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경기부양 및 성장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목표는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

록 유도하여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국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하여 주가 상승, 기업 실적향상 및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등 물가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일본의 장단기 채권금리는 일제히 급락하였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발표한 이후 엔화가치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그림 4] 참조) 이러한 현상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현상인바, 상대적으로 안전통화로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림 4]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엔)



주: 연간 평균 환율임. 2016년은 4월까지 수치임

출처: 일본 통계청(<http://www.e-stat.go.jp>)

### 3. 정책효과

금융위기 발발 이후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정책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대응정책은 경기회복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통하여 2% 인플레이션 달성 과 고용 증대를 구체적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2.78%까지 하락했으나,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정책 등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2010년 2.53% 성장으로 회복하고 최근에는 2%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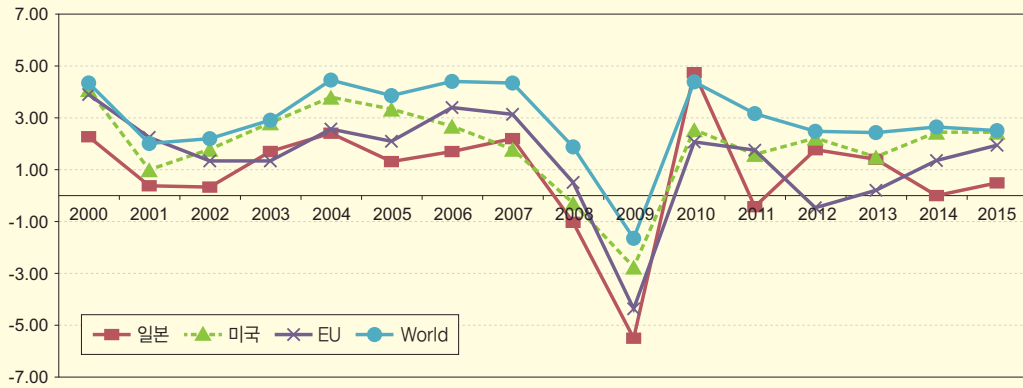
유럽연합(EU)은 2008년 이전에는 2~3%대 성장률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2008년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09년에 -4.39%까지 떨어졌다. 이후 반등에 성공했으나 2012년에 다시 한 번 마이너스

성장이 되풀이되는 Double Dip에 빠졌고 최근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골이 가장 깊었고 2010년에 급격하게 회복하였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래 반등하고 있지만 주요국 가운데 가장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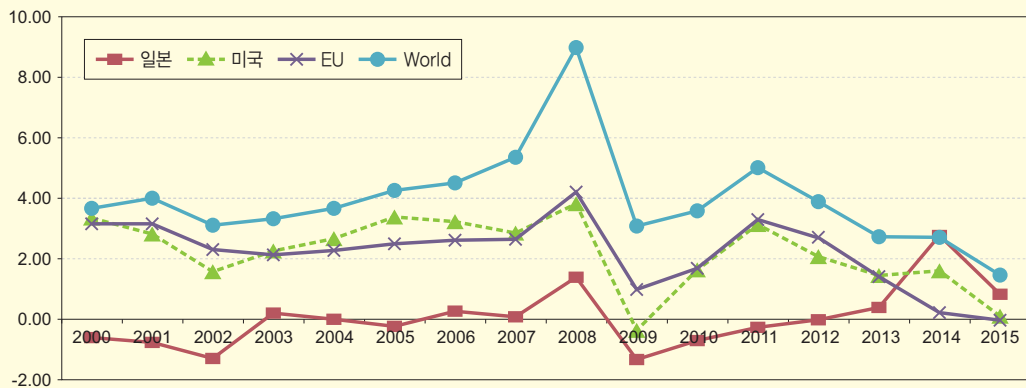
출처: <http://databank.worldbank.org/data/>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은 2011~12년에 걸쳐 동 목표를 잠시 달성하였으나 최근 다시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다. 2014~2015년에는 오히려 일본

의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2016년 들어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림 6]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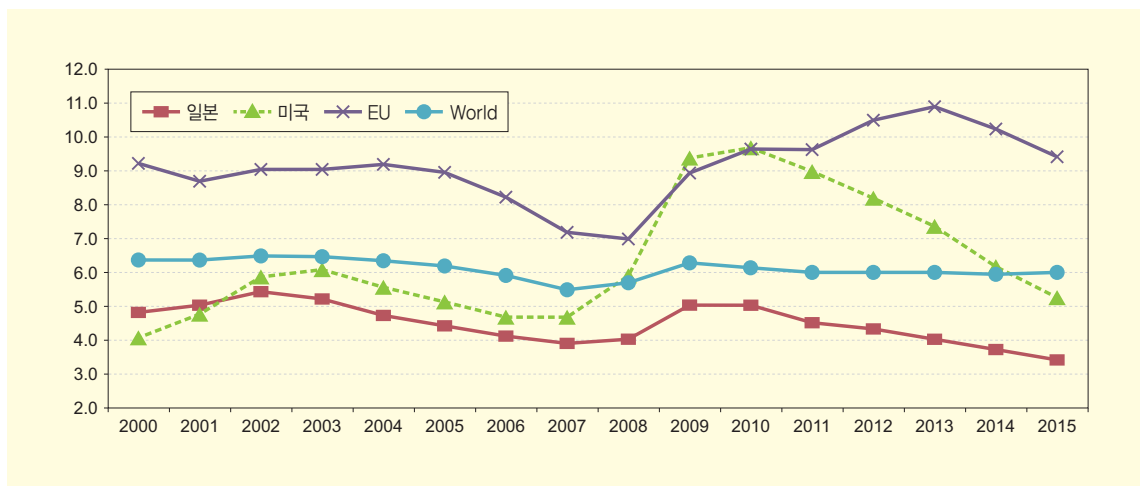
출처: <http://databank.worldbank.org/data/>

실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 세계 평균은 6%대에서 큰 변동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조사대상국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9.7%까지 높아졌으나,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2015년 기준 5.3%까지 실업률이 하락하였다. EU 전체 평균 실업률을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대략 9%대의 실업률을 보였으나 2008년 6.97%까지 낮아진 이후 최근까지 계속해서 높아져 2013년에는 실업률이 11%에 육박하였다. 그 후에 하락세를 보여 2015년에 9.4%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금융위기 이전부터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여왔는데, 2015년말 기준 실업률은 3.4%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금융완화정책과 확장재정정책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하였다. 물론 국가별로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과 기간이 다르고, 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impact)이 달리 나타났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다 집약적인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2010년에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회복이 지연되었다. 그뿐 아니라, 유럽 연합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연합체이면서 동시에 각국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체제 하에서 국가별 차이를 극복하면서 공통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부진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난민 위기 등 최근에 불거진 경제 외적인 사건도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을 키움으로써 정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주요국의 실업률

(단위: %)

출처: <http://databank.worldbank.org/data/>

“  
부시 행정부 마지막 재무장관인 폴슨과  
연준 의장 버냉키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체로  
가이트너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구제금융이 실시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가 이루어졌다.  
”

### Ⅲ.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책 이슈

금융위기로 인하여 제기된 정책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다루어왔던 이슈들과 함께 전통적인 정책수단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 발생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정책수단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담당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으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IMF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금융위기의 발원지였던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적 논쟁이 있었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1. Geithner vs Bair: 대마불사

금융위기의 수습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국 최고 정책담당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와 실라 베어(Sheila Bair)의 예를 들 수 있다. 가이트너는 부시 행정부 말기에 미국 뉴욕연방은행장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40대의 나이에 제1기 내각 재무장관을 지냈다. 베어는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을 맡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금융위기의 수습과정에서 미국 경제정책을 지휘했던 최상위 정책결정자 그룹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마불사 vs 도덕적 해이 문제로 대립하였다.<sup>9)</sup>

가이트너는 비록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측면이 있지만 대형금융기관을 파산하도록 둘 경우에 초래되는 시스템 위험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구제금융을 실시하자는 의견이고, 베어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자는 의견이었다. 대형금융기관의 부실이 순차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 처리 방안에 대하여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충돌이 있었으나, 부시 행정부 마지막 재무장관인 폴슨과 연준 의장 버냉키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체로 가이트너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구제금융이 실시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가 이루어졌다.<sup>10)</sup>

대마불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 연방은행장 닐 카시카리(Neel Kashkari)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sup>11)</sup> 대형은행이

9) Geithner(2014)와 Bair(2012) 모두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을 회고하는 자서전을 썼다. 특히 Bair(2012)는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결정과정과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 충돌에 대하여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다.

10) 금융기관의 감독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 2010년에 성안된 Dodd-Frank 법이다. 대형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자본금 확충과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예측하여 보장조치를 취하게 하는 stress test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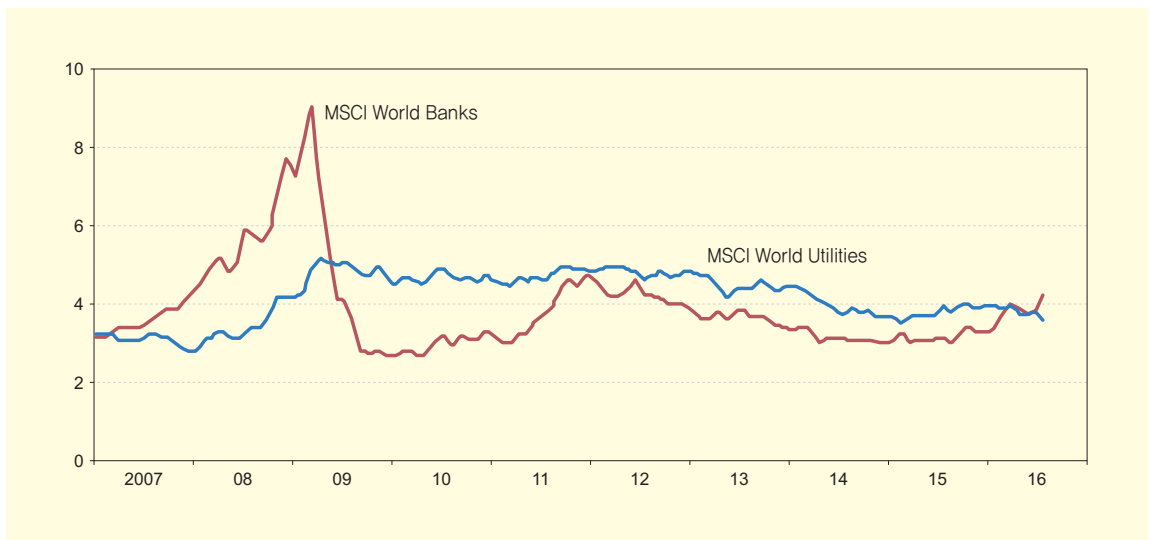
11) President's speech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Lessons from the Crisis: Ending Too Big To Fail*, Feb. 16, 2016, Th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파산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기 위하여 대형은행으로 하여금 공기업(utility)과 같이 자본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sup>12)</sup>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아예 파산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은행과 공기업의 배당 수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을 나타내는 바, 최근 그 추세가 서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규제수준, 주식가치, 수익성, 배당금 등에 있어서 은행과 공기업의 지표들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그렇게 무리한 제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앞으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대마불사 문제 해결을 위한 흥미로운 제안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sup>13)</sup>

[그림 8] 은행과 공기업의 배당 수익률 추이

(단위: %)



원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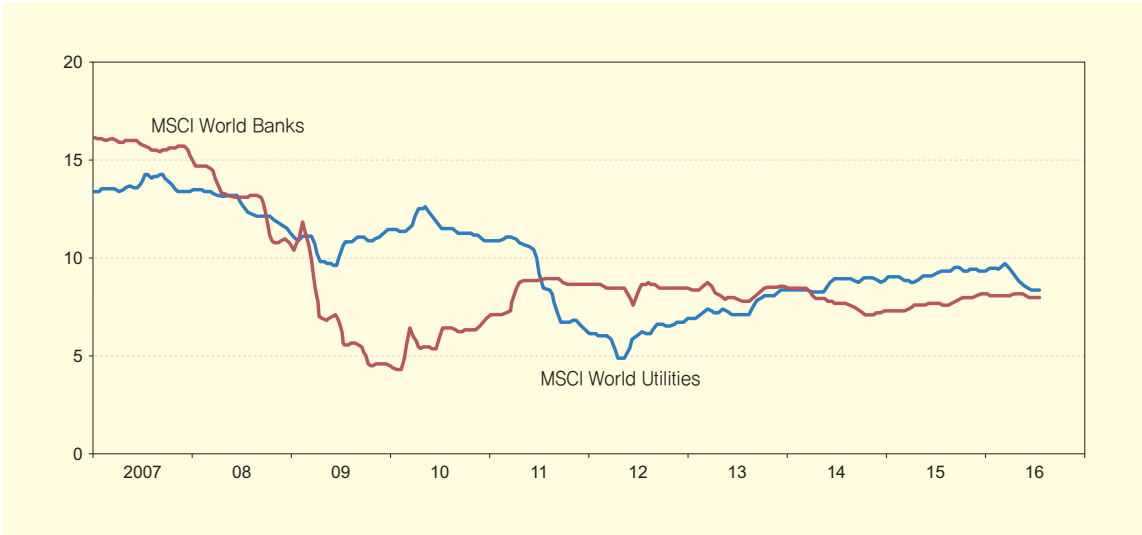
출처: *Financial Times*, "Banks: Too dull to fail?," Sep. 6, 2016.

12)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대폭 확대에 대해서는 Bair(2012), Romer(2014) 등도 같은 의견이다.

13)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JPMorgan의 Jamie Dimon 행장은 은행은 위험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판단하고 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동시에 고객 유치를 위하여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과는 성격이 판이하다고 주장한다(*Financial Times*, "Banks: Too dull to fail?," Sep. 6, 2016.).

[그림 9] 은행과 공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 추이

(단위: %)



원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출처: *Financial Times*, "Banks: Too dull to fail?," Sep. 6, 2016.

## 2. Bernanke vs Hoenig: 금리논쟁과 마이너스 금리

벤 버냉키(Ben Bernanke)는 금융위기시 미국 연준 의장(2006~2014)이었고, 토마스 호니그(Thomas Hoenig)는 미국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장(1991~2011)이었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연준이 지속적으로 정책금리(federal funds rate)를 인하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호니그는 일관성 있게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투표를 해 왔다.<sup>14)</sup> 그는 Great Moderation 시대 이래로 저금리가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이러한 기조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한 것이다.<sup>15)</sup> 호니그는 이러한 염려는 특히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더욱 공감을 얻어가는 중이다.

버냉키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비전통적 특단의 정책수단인 양적완화를 시행하기도 한 반면, 호니그로 대표되는 매파(hawks)는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하여 반대함으로써 통화정책결정과과정에서의 대표적인 대립상을 보여준다. 물론 동일한 경제분석 자료에 기초해서도 위원 개인별로 경제를 전망하는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위기에,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매파 위원들이라고 개인적으로 무분별한 완고함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정책결정이 기반하

<sup>14)</sup> Bernanke(2015)는 그의 자서전에서 호니그의 반대는 항상 고정표로서 예상할 수 있었음을 회고한다.

<sup>15)</sup> *The Kansas City Star*, "KC Fed President Tom Hoenig: 'I hope I'm wrong'," Jan. 23, 2011.

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조차 연준의 통화정책 메커니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고 고백하였다.<sup>16)</sup>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1987~2006년)이던 20년간 연준은 금융완화정책을 통하여 간헐적인 하강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호황을 지속시킴으로써 경기변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자, 그동안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한 결과 그 부작용이 축적되어 버블이 붕괴한 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라는 해석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융위기 이후 Great Moderation 시대보다 훨씬 규모가 큰 다양한 금융완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금리인하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적 이론을 제시한 것은 유효수요를 강조한 케인스였다. 1929년 주식시장 폭락 당시의 후버(Hoover) 대통령은 균형재정을 강조하여 줄어든 정부 수입을 증대하고자 각종 세금을 인상하였으며,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을 통과시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더욱 위축되었고,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로 걷게 되었다.<sup>17)</sup> 1932년 후버를 누르고 당선된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은 케인스의 이론에 근거하여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부양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유효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라고

“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융위기 이후  
Great Moderation 시대보다  
훨씬 규모가 큰 다양한 금융완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금리인하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보기도 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금융위기를 맞이한 정책당국은 당시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수요 진작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비둘기파(doves)의 논리일 것이다.

정책금리와 관련하여 양적완화에 이어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직접적인 목적은 환율 조정 등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출 증대를 통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저축이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로금리 내지 마이너스 금리로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낮은 상황에서 더 이상 통화정책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본다.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이다. 정부가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하여 경기진작을 위한 환경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시

16) “The bottom line is that we really do not know how this system works.” Mallaby(2016)

17) Friedman and Schwartz(1963)는 미국 연준이 불필요하게 금리를 인상하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예로서 1920년 1월~6월, 1931년 10월, 1936년 7월~1937년 1월의 세 시기를 들고 있다. 대공황의 시작기인 1931년 10월에 연준이 재할인율을 1.5%에서 3.5%로 인상함에 따라 통화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산업생산이 24%나 줄어들었다(pp. 688~689).

“  
**로렌스 서머즈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에 통화정책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확대 재정정책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Friedman and Schwartz(1963)가 지적한바, 대공황의 경험에서 선불리 금리를 조기에 인상함으로써 경기회복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하여 정책당국이 극도로 조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18)</sup>

금리정책에 대한 시각을 선진국 vs 신흥국의 프레임에서 보는 이견도 존재한다. 시카고 대학 교수 출신으로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은 선진국의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경기진작에만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였다.<sup>19)</sup> 세계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당장은 자국 경기회복에 지장을 받을지 모르지만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통하여 신흥국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시간을 줌으로써, 신흥국의 수요가 살아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선진국들도 궁극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논리이다.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을 늦추다가 갑자기 올리게 되면 급격한 자본이동을 초래하여 신흥국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Rey(2014)는 자유로운 자본이동의 이점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예상의

로 약하는 점을 밝혔고, Fischer(2011)는 단기적인 자본이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당시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에 대하여 많은 유보 조항을 달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야 했던 기억과 1997년의 외환위기 당시를 생각한다면, 글로벌 정책이라는 것은 강대국의 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 3. Summers vs Osborne: 재정건전성

재정정책상의 논쟁은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논쟁의 연장선이라고 하겠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 수단으로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기존의 학설이지만, 대형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두 가지 정책을 가릴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일단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난 후 정책당국은 아직도 미진한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다. 과도한 국가채무가 위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긴축재정정책으로 전환할 적절한 타이밍과 속도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로렌스 서머즈(Lawrence Summers)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에 통화정책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확대 재정정책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0)</sup> Roubini(2014)도 제로금리정책하에서는 재정승수가 더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간접적

18) 최근에는 지하경제대책과는 별개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현금을 없애야 한다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성훈(2016), Rogoff(2014) 등) 그러나 민경국(2016)은 현금 없는 경제를 국가권력과 자유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9) Financial Times, "India's central bank has 'momentum'," Sep. 5, 2016.

20) 2016 Homer Jones Memorial Lecture, "Secular Stagnation and Monetary Policy," YouTube, 2016. 8. 5. 방문

으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주장한다.

반면 브렉시트(Brexit) 투표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카메론(Cameron)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긴축재정을 주장하였다. 오스본은 Reinhart and Rogoff(2010)의 연구를 언급하면서<sup>21)</sup> 정부채무를 줄이기 위한 긴축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einhart and Rogoff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국가채무가 GDP의 90%를 넘게 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힘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였다.<sup>22)</sup> 그들은 서문 첫 페이지에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가의 수세기에 걸친 위기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과도한 부채의 축적이 모든 위기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부채의 주체가 정부, 은행, 기업, 소비자를 불문하고 호황기에는 별 문제 없는 듯 보일지라도 과도한 부채는 반복되는 위기의 공통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 4. Draghi vs Schäuble: 정치와 경제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을 떠난 순수 경제정책은 생각하기 힘들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경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힘들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것은 유럽연합과 유로존이라는 지역 내 국가간의 결합체 및 공동화폐지역이 존재하고, 그러한 결합체가 하나의 국가만큼의 결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소속 국가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공통적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이

“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을 떠난  
순수 경제정책은 생각하기 힘들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경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힘들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다. 유럽이 미국보다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 속도가 늦은 것은 이러한 영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마리오 درا기(Mario Draghi)는 이탈리아 중앙은행장을 지낸 ECB의 총재(2011~)이고,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EU의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재무장관(2009~)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라기는 무제한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선언하였고, 쇼이블레는 이에 반대하였다.<sup>23)</sup>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는 과정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독일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은 세계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독일은 유럽의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양호한 국가채무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측면에서 지나친 확장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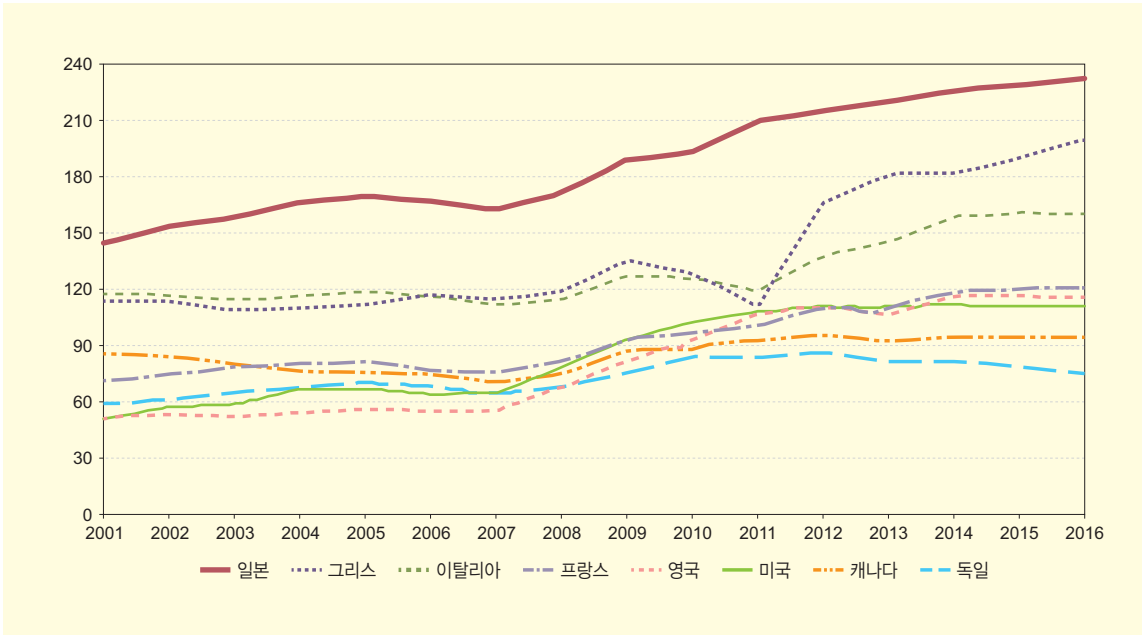
21) The Guardian, "The error that could subvert George Osborne's austerity programme," April 18, 2013.

22)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대학원생이 Reinhart and Rogoff가 사용한 데이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검증한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90%를 넘는 국가의 GDP 성장률이 -0.1%가 아니라 2.2%로 나왔다. 이에 대하여 Reinhart and Rogoff는 데이터상의 문제점을 시인하였으나 전체적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3) 실제로 ECB 이사회에서 양적완화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ECB 이사회 멤버이자 독일연방은행(Bundesbank)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Jens Weidmann)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독일과 EU의 대립 구도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경제 수장으로서 쇼이블레라고 적었다.

[그림 10]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단위: %)



출처: 일본 재무성([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dition/007.htm](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dition/007.htm))

독일의 메르켈(Merkel) 총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선거를 통하여 독일국민에게 지는 것이 아니지, 유럽연합내의 다른 나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 국가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정책 효과의 불일치는 이러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약점이라고 하겠다. 지역 내의 재정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유럽 재무부의 설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sup>24)</sup>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정책적인 갈등의 예는 그리스 재정위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그리스 재무장관(2015.1~2015.7)으로서 트로이카(Troika)<sup>25)</sup>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주도하였다. 2010년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EU의 조건부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또한 부수 조건은 그리스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기에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의 부채 탕감과 EU로부터 보다 관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그리스 국민들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조건에

24) 중세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였던 카롤루스 대제(Carolus Magnus) 사후, 프랑크 왕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나누어졌다. 유럽인들은 유럽통합의 기원을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종교를 통한 유럽 제국에 두었던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에서 찾고 있다. 1978년의 European Monetary System의 탄생, 1992년의 Maastricht 조약, 1999년의 유로화 도입은 유럽합중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5) 트로이카는 그리스 구제금융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EU, ECB, IMF를 가리킨다.

대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당시 치프라스(Tsipras) 수상은 투표결과에 반하여 최종 협상안을 수용하였다. 트로이카의 논리는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게 위기에 빠진 국가에 대하여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긴축재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전쟁 배상금의 부담을 짊어진 독일에 대하여 연합국이 부채를 탕감하여준 사례에서 보듯이 취약한 상태의 국가가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이나 대출을 갚을 능력은 여건상 희박한 것이 일반적이다.<sup>26)</sup> Varoufakis(2016)는 구제금융이 결국 유럽 대형은행의 구제금융에 쓰이게 되어 그리스 국민 입장에서는 채무만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 사례도 EU 회원국 안에서 각국의 경제력과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치와 경제 간 갈등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 IV. 정책적 교훈과 시사점

Reinhart and Rogoff(2010)는 경제위기를 세분화하여 정부 채무위기, 은행위기, 인플레이위기, 외환위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그 규모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겠지만,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Romer(2014)도 과거 역사를 볼 때 금융위기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27)</sup> 2008년의 금융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에 비견될 만큼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지만,

“  
금리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흔들리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복수의 정책수단과  
복수의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

그 해결책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 단계에서 지금까지의 국제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에 대한 재검토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라는 수단을 가지고 인플레이율이라는 중간정책목표의 달성을 통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금리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흔들리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복수의 정책수단과 복수의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닐지라도, 금융위기를 맞아 실제로 금리조정과 경기순환 간의 관계가 미약해졌음을 직접 경험하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유의 실험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훨씬 무겁게 다가오는 이슈이다. 이 문제는 재정정책과의 정책혼합(policy mix)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학계와 정책당국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당

26) Reinhart and Rogoff(2010)는 국가(nation-state)가 성립된 이래 수많은 국가부도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대외채무에 대하여 8번 부도를 냈으며, 스페인은 1800년 이전에 6번, 이후에 7번의 부도를 낸 바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7) 미국의 지난 30년만을 보아도 6번의 금융위기가 있었다.

“

우리나라 은행이 국제적으로  
메가뱅크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만큼,  
규모를 키우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초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과 같이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켜 오히려 저축을 증가시키는 현상은, 비슷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준다.<sup>28)</sup>

이번 금융위기를 통하여 부각된 또 하나의 이슈는 대마불사의 문제이다. 이 문제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금융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취급되어 왔다. 금융위기의 수습과정에서 최고 정책담당자 간 많은 이견을 보였던 문제도 바로 이 문제이다. 일단 금융안정을 위하여 자본금 규정을 강화하자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그 다음 단계로 대마불사의 해결책은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 크게 보아 하나는 주요 대형금융기관을 100% 자본금을 가진 공기업화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대형금융기관을 분할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제안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민간금융기관의 반발과 아직 논의의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둘째 방안이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 물론 이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자본금을 늘리면서 자의든 타의든 은행의 규모를 키우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볼 때 대형화할수록 은행의 입장에서는 규제금융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정리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순조롭게 정리하기 어려워진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이 국제적으로 메가뱅크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만큼, 규모를 키우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금융안정 측면에서나 금융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대비 수단으로 자본통제(capital control) 방식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금융위기가 주는 시사점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자본통제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해서는 안 될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자본통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IMF에서도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자본통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통제를 실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통한 통제와 수량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의 장단점 비교, 여타 건전성 정책과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자본을 장기자본으로 가장하여 통제를 피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

28) 일본뿐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을 받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도 저축률이 1995년 이래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The Wall Street Journal, "Are Negative Rates Backfiring? Here's Some Early Evidence," Aug. 8, 2016.)

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거시건전성 3중 세트와 주변국과의 통화스와프<sup>29)</sup> 이외에 ‘영세율 2단계 토빈세’와 같은 외환거래세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30)</sup>

Eiji(2016)에 따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은 버블의 붕괴로 인한 임금삭감과 수요 부족이었고, 그 이후 이러한 요인에 의한 디플레이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디플레이션의 지속되면서 정부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SOC에 투자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수요를 확대시키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실업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가 정부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일본은 국가채무/GDP 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계와 정부의 부채는 늘어나고, 기업만 총저축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sup>31)</sup>

우리나라도 가계, 기업,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일본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오히려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적자재정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6년 말에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법은 국가채무를 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

“  
우리나라도 가계, 기업,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일본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오히려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를 GDP의 3%로 한정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게 하는 Pay-go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 정부하에서는 단기적인 성과가 중장기적인 성과보다 중요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조항의 남용 방지 등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정의 목적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정도의 국가채무비율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국가채무를 감축해야 하는가 하는 거시재정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법률의 기초를 구성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매우 긴요한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금융부문의 과잉(excess)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의 Big Bang으로 상징되는 금융규

29) 통화스와프는 자본유출 비상시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및 중국과의 스와프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장치로서 필요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외환거래세의 틀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30) 영세율 2단계 토빈세는 정상시에는 외환거래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하여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는 비상시에는 세율을 높이는 탄력세율 구조의 외환거래세의 한 종류이다. 여기서 낮은 세율을 0으로 하자는 것이 영세율 2단계 토빈세이다. 영세율 2단계 토빈세의 보다 자세한 구조에 대해서는 홍범교·이상엽(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31) 기업 총저축(corporate gross savings)의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일본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20%를 상회하여 다른 구미 국가들에 비하여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 충격이 실물경제에 부과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금융활동이나 금융구조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든 교정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함직하다.  
”

제완화의 움직임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이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과잉이 쌓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부문 자체가 훨씬 더 큰 규모로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 금융부문이 비대해짐에 따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금융위기 시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외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1년 미국에서 있었던 ‘Occupy the Wall Street’ 운동이라든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치 보수화 경향은 위기로 인한 소득 양극화의 결과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Akerlof(2014)는 1870년부터 2008년까지 14개 선진국의 경기변동을 조사한 Jorda et al.(2011)을 인용하여 불황을 금융형 불황(financial recession)과 일반 불황(normal recession)으로 분류할 때 금융형 불황이 상대적으로 불황의 정도가 더 심하고 길었을 뿐 아니라, 불황 직전의 신용/GDP 비율이 클수록 회복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지적하였다.<sup>32)</sup> Romer(2014)도 금융부문이 역사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져오는 원천이라고 보았고, 금융이 실물경제에 부과하는 비용에 비하여 금융혁신의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sup>33)</sup> Archand et al.(2012)은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의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한 금융의 심도(depth)를 금융과잉의 대리변수로 보고, 금융과잉과 경제성장과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비율이 80~100%를 넘게 되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보였으며, 우리나라도 금융과잉이 100%를 넘어서는 국가의 하나로 지목하였다.<sup>34)</sup> 그렇기 때문에 금융과잉의 문제는 결코 선진국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금융 충격이 실물경제에 부과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금융활동이나 금융구조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든 교정세(Pigouvian Tax)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함직하다.

끝으로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다. 특히 조세와 재정정책은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치에서도 양당 간의 타협이 점차 실종되어 가는 분위기에서 전 재무장관 Paulson(2013)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적 과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5)</sup> 이는 비단 미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과정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KPF

32) Jorda et al.(2011)은 신용(credit)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신용을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로 정의하면 최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은 평균적인 회복보다 GDP의 1% 정도 높고, 만일 신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대출까지 포함한다면 회복의 중앙값(median)보다 4% 정도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Akerlof(2014), p. 318.)

33) Volcker는 지난 40년간 최대의 금융혁신은 ATM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34) 금융과잉의 정도와 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대해서는 Archand et al.(2012)을 참고하기 바란다.

35) "I am not sure what the solutions for this ever more troubling political dysfunction, but it is certain that we must find a way to improve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in Washington. The stakes are simply too high not to."(p. 439.)

### 〈참고문헌〉

- 강유덕,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대응과 역할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시리즈, 14-01, 2014.12.22.
- 김성훈, 「현금없는 경제: 의미와 가능성」, KERI Brief 16-28, 한국경제연구원, 2016.9.12.
- 민경국, 「현금없는 경제?」, 『한국경제신문』, 다산칼럼, 2016.9.28.
- 이승호·강현주,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6.1.
- 임형석,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정책 평가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16.4.
- 홍범교·이상엽,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2-03, 한국조세연구원, 2012.11.
- Akerlof, George, “The Cat in the Tree and Further Observations: Rethinking Macroeconomic Policy II,” in *What Have We Learned?: Macroeconomic Policy after the Crisis* ed. by Akerlof, George et al., Cambridge, The MIT Press: 2014, pp. 317~326.
- Archand, Jean-Louis, Enrico Berkes and Ugo Panizza, “Too Much Finance?,” IMF Working Paper, WP/12/161, June 2012.
- Bair, Sheila, *Bull by the Horns: Fighting to Save Main Street from Wall Street and Wall Street from Itself*, New York: Simon & Schuster, 2012.
- Bernanke, Ben, *The Courage to Act: A Memoir of a Crisis and Its Aftermath*, New York: W.W.Norton, 2015.
- Eiji Tajika, “Japanese economy and Public Finance: What is the Root Cause of the Mounting Public Debt and What to Do about It?” 제11회 세종열린대화 발표자료, June 2016.
- Fischer, Stanley, Central Bank Lessons from the Global Crisis, Dinner Lecture by Professor Stanley Fischer at the Bank of Israel Conference on “Lessons of the Global Crisis,” Jerusalem, 31 March 2011.
- Friedman, Milton and Anna Schwartz,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57-196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 Geithner, Timothy, *Stress Test: Reflections on Financial Crises*, New York: Broadway Books, 2014.
- Jorda, Oscar, Moritz Schularick and Alan Taylor, “When Credit Bites Back: Leverage, Business Cycles and Crises,” NBER Working Paper No. 17621, November 2011.
- Mallaby, Sebastian, *The Man Who Knew: The Life and Times of Alan Greenspan*, New York: Bloomsbury, 2016.
- Paulson, Henry, *On the Brink: Inside the Race to Stop the Collapse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New York: Business Plus, 2013.
- Reinhart, Carmen and Kenneth Rogoff, *This Time is Different: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Folly*, Princeton: Princeton

- University Press, 2010.
- Rey, Helene, "Capital Account Management," in *What Have We Learned?: Macroeconomic Policy after the Crisis*, ed. by Akerlof, George et al., Cambridge: The MIT Press, 2014, pp. 307~313.
- Rogoff, Kenneth, "Costs and Benefits to Phasing Out Paper Currency," NBER Working Paper No. 20126, 2014.
- Romer, David, "Preventing the Next Catastrophe: Where Do We Stand?" in *What Have We Learned?: Macroeconomic Policy after the Crisis*, ed. by Akerlof, George et al., Cambridge: The MIT Press, 2014, pp. 327~333.
- Roubini, Nouriel, "Fiscal Policy," in *What Have We Learned?: Macroeconomic Policy after the Crisis*, ed. by Akerlof, George et al., Cambridge: The MIT Press, 2014, pp. 209~222.
- Varoufakis, Yanis., *And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New York: Nation Books, 2016.
-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15.

#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고

## I. 서론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jyoon@kipt.re.kr)

2000년대 초반부터 청년실업 및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사회의 주요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정부예산 및 정책 등에서는 청년일자리 관련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의 중요성을 염두에 둘 때, 청년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우선시되는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조만간 직면하게 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청년일자리와 더불어 고령층 일자리에 대해서도 함께 주목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십여년 동안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대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고령층 일자리는 국가, 개인, 기업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령층의 퇴직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가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한 고령층 비중의 증가는 재정수입감소와 재정지출증대를 초래하여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필요하지만, 퇴직 후를 위한 저축수준이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고령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소비부진, 가계부채 등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령층의 퇴직은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한 산출물인 고령층의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력과 경험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무형자산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베이비붐세대<sup>1)</sup>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  
**변화하는 고령층의 특성에 맞추어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관련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

퇴직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퇴직 및 근로인구의 감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숙련기술의 단절,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의 경우에는 보유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금융자산의 비중은 낮기 때문에 이들이 은퇴 후에 보유 부동산을 현금화하면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할 개연성이 존재하며,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공적연금으로 인해 고령빈곤층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소지도 존재한다.

고령층 일자리의 확대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개입하여 고령층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

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과거에 인구구조 변화를 겪었고, 현재 겪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고령층의 특성 또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고령층으로 접어드는 세대는 기존의 세대들보다 교육수준이 높으며 자산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공적연금의 수혜자일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변화하는 고령층의 특성에 맞추어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관련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sup>2)</sup>

## II. 고령층 고용 현황

먼저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노인)로 분류되는 연령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법에 따라 그 기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에서는 각각 65세 이상과 60세 이상 노령연금 급여 대상자를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은 고령자, 50세 이상 54세 미만은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준고령자 및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입법예고<sup>3)</sup>한 상태에 있다.<sup>4)</sup>

우리나라의 55~64세 고령층 고용률은 2015년

1) 1955~1963년생으로, 2010년 기준 712.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통계청 보도자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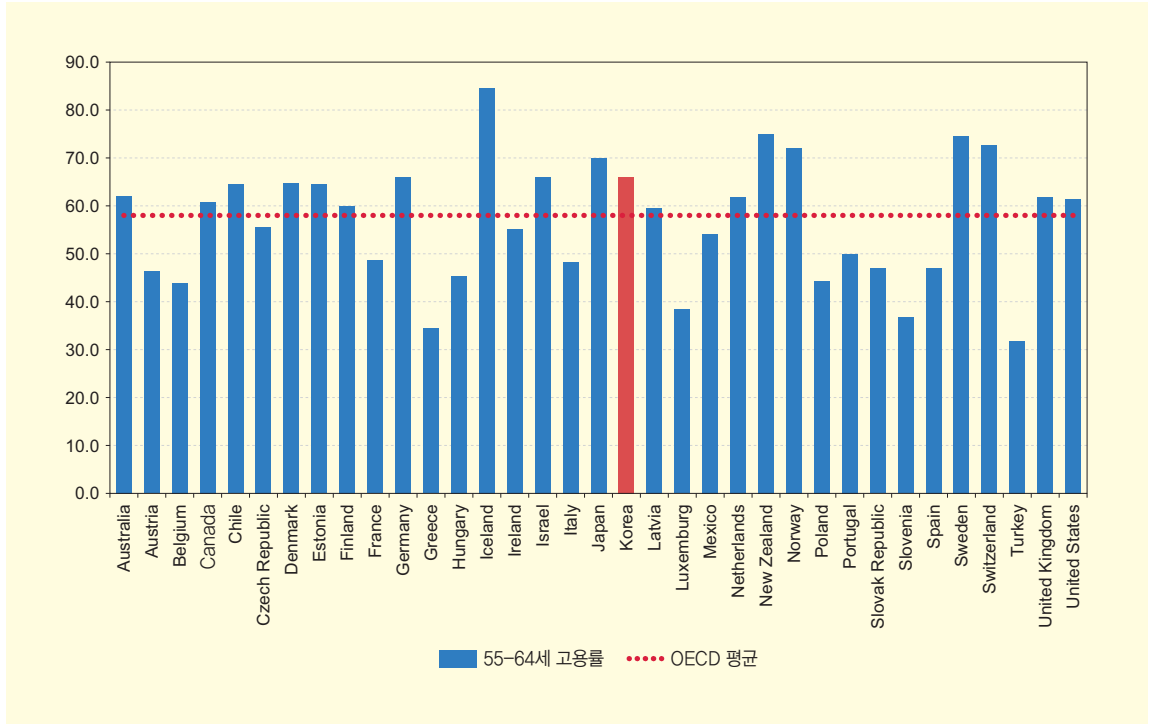
2) 고령층 일자리 문제는 임금제도, 연금, 고용관련 법률, 고령층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3)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298호, 2016.9.12.

4)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고, 고령층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장년 대신 고령층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그림 1] OECD 국가 55~64세 고용률(2015년 기준)

(단위: %)



출처: OECD.Stat

기준 65.9%로 OECD 평균 58.1%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핵심생산인구(25~54세)의 고용률이 75.9%로 OECD 평균 76.5%와 유사하고, 15~24세의 고용률이 26.9%로 OECD 평균 40.5%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나라 55~64세 고령층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7.8%p 더 높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사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고령층이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현실과 아직도 다수의 고령층이 농·어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일 개연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199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고령층 중 다수가 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sup>5)</sup>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시행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5)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공적연금 수급률은 40.4%(국민연금 36.4%, 공무원연금 3.5%, 사학연금 0.5%).

“  
5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생계형 자영업,  
임시·일용직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고령층 고용의 질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그리고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이 49세(남성 52세, 여성 47세)<sup>6)</sup>로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존재한다.

〈표 1〉 출생년도별 연금수급 개시연령

| 출생년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
| 수급연령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 출생년도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
| 수급연령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또한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40%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자발적으로 떠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퇴직연령은 71.8세로 OECD 평균 64.6세보다 7.9세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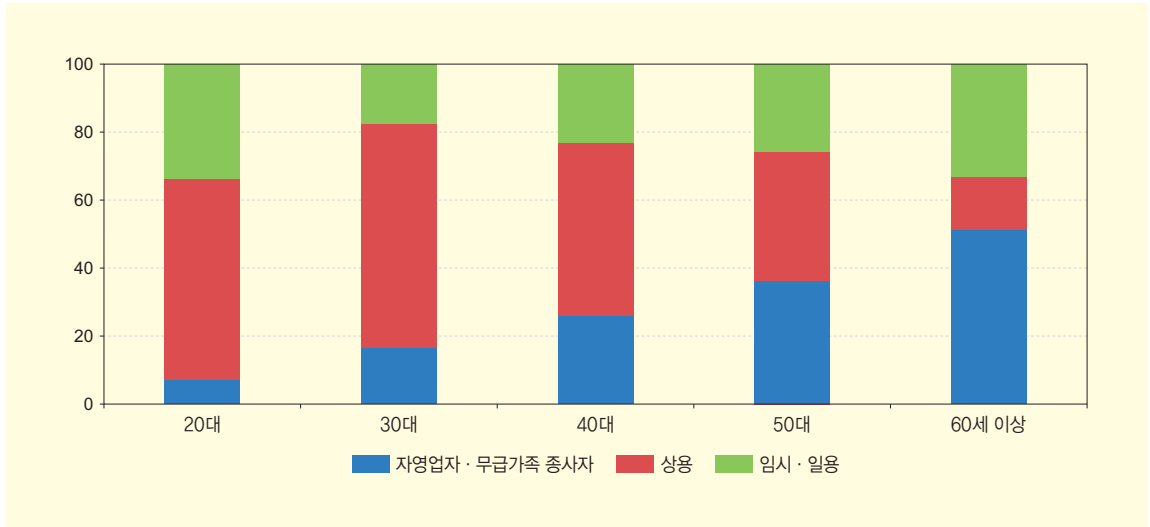
실제로 통계청 조사<sup>8)</sup>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중 61.2%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0%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의 깊게 살펴볼 점은 장래에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남성이 74.0%, 여성이 49.7%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원한다는 비율은 여성이 61.3%로 남성 55.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장수리스크 등으로 인해 여성 고령층이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60대는 재취업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5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생계형 자영업, 임시·일용직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고령층 고용의 질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6) 통계청(2016.5.)  
7) OECD(2015)  
8) 통계청(2016.09.)

[그림 2] 연령별·종사상지위별 비중(2015)

(단위: %)



주: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  
출처: 고용노동통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두 차례<sup>9)</sup>에 걸쳐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을 2013년

에 개정하고, 2016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참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16.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9)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07~2011년,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2~2016년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보건복지부 주도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주도의  
 고령자고용촉진 사업이 있다.**  
 ”

먼저 두 사업의 재원적 측면을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운용되는 반면,<sup>10)</sup> 고  
 령자고용촉진사업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지자체예산으로  
 운용되는데,<sup>11)</sup> 국비의 경우 2004년 122억원에서  
 2017년 4,40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32% 증가하  
 였다. 반면,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은 동기간 449억  
 원에서 936억원으로 연평균 6% 증가하는 데 그쳐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과 자원배분이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고령층 대상 일자리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  
 자리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보건복지부 주도의 노  
 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용노동부 주도의 고령자고용촉진 사업  
 이 있다.

〈표 2〉 고령층 대상 일자리 사업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고령자고용촉진사업                                                                                                                                                                                                         |
|---------|-----------------------------------------------------------------------------------------------------------------------------------------------------------------------------------------------------------------------|-------------------------------------------------------------------------------------------------------------------------------------------------------------------------------------------------------------------|
| 부처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 기간      | 2004년~계속                                                                                                                                                                                                              | 1993년~계속                                                                                                                                                                                                          |
| 목적 및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li> <li>•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대상자를 지원하며(공공분야), 일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만 60세 이상 대상자도 지원 가능(민간분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li> <li>• 주된 일자리 퇴직자 등 재취업을 원하는 장년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li> <li>•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전직 지원</li> </ul> |
| 주요 내용   | (공공분야) 공익활동, 재능나눔<br>(민간분야)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중장년층취업지원, 장년인턴제취업지원금 등                                                                                                                                                                      |

출처: 기획재정부(2016.5.), 김우주(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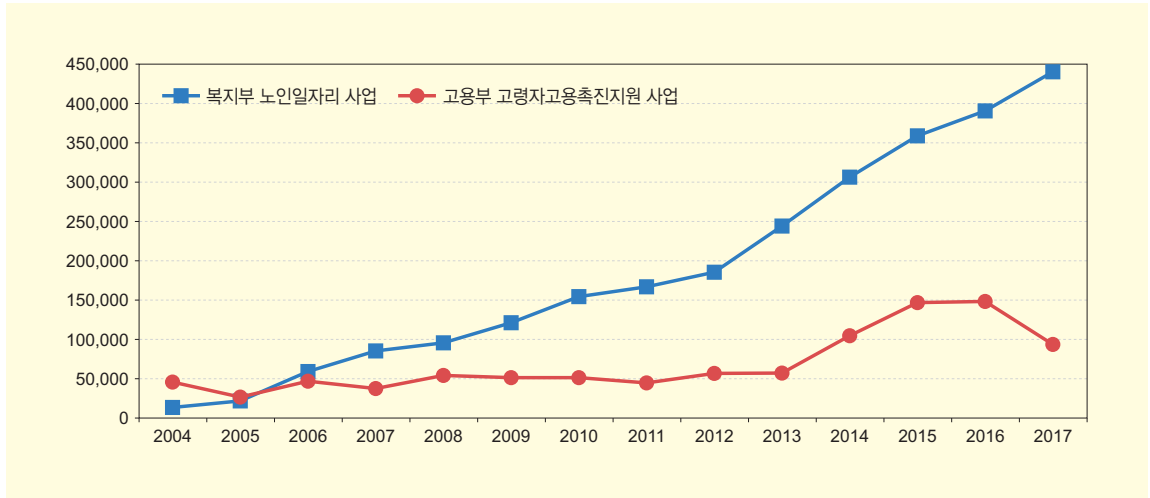
복지로(<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oSno=348>)

10) 2010~2012년에는 일반회계와 광특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예산만으로 운용되고 있다

11) 노인일자리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민간보조일자리와 지자체보조일자리로 구분된다. 민간보조일자리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반면, 지자체보조일자리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예산(매칭)을 이용하여 수행기관에 사업을 위탁한다.

[그림 3] 부처별 고령자 일자리 사업 예산(2004~2017년)

(단위: 백만원)



주: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  
출처: 고용노동통계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된다. 공공분야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노인 1인 가구, 직업이 없는 노인,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는 등 복지적 차원에서의 노후소득지원

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의 유형으로 구성된 민간분야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일자리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 노인일자리사업 주요내용

| 구분 | 유형(시작년도)      | 내용                                                                                                                                                  |
|----|---------------|-----------------------------------------------------------------------------------------------------------------------------------------------------|
| 공공 | 공익활동(2004)    | (전국형: 자원봉사활동)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활동<br>(지역형: 표준프로그램)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학습지도 및 공공기관 업무지원 등 지역사회 활성화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    | 재능나눔활동(2014)  | 재능·경험이 있는 노인이 취약·학대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노인을 위한 권익증진 활동                                                                                                   |
| 민간 | 시장형사업단(2004)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    | 인력파견형(2004)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    | 시니어인턴십(2014)  |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    | 고령자친화기업(2014)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사업참여 근로자의 대부분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  
**현재의 고령층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이  
 저소득 고령층 일자리에 중점을  
 두어왔던 것은 의미가 있으나,  
 앞으로는 새로이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소득·중기술 이상의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공공 분야와 민간분야 참여자 비율이 90 : 10으로 공공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공공분야 중에서도 공익활동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 그 자체보다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소득지원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민간분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편이지만, 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경우에는 보수가 낮은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노후 소득지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여 왔다. 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일자리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한 일자리의 수가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은 공공분야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로 구분되는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은 등한시된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용이하나 수요자의 요구와는 상이한 정부의 직접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표 4〉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단위: 명, %)

| 유형   |          | 참여자 수   | 비중   |
|------|----------|---------|------|
| 공공분야 | 공익활동     | 305,140 | 79.1 |
|      | 재능나눔     | 40,847  | 10.6 |
| 민간분야 | 시장형사업단   | 22,889  | 5.9  |
|      | 인력파견형사업단 | 9,730   | 2.5  |
|      | 시니어인턴십   | 6,176   | 1.6  |
|      | 고령자친화사업  | 1,181   | 0.3  |

주: 참여자 수는 2015년 실적 기준  
 출처: 김우주(2016) 참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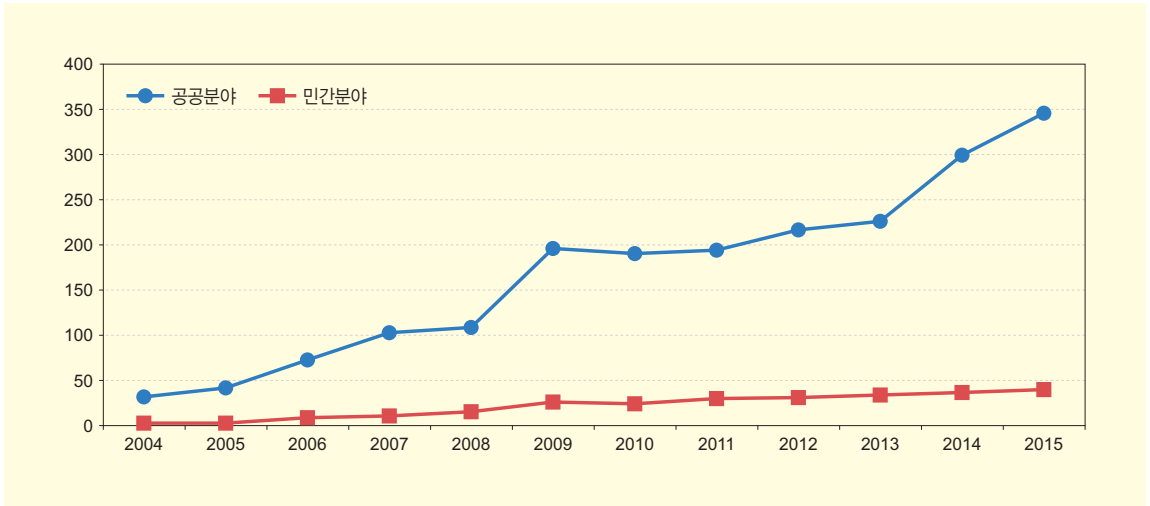
〈표 5〉 노인일자리 사업의 보수

| 공공분야    |            | 민간분야     |           |            |             |
|---------|------------|----------|-----------|------------|-------------|
| 공익활동    | 재능나눔       | 시장형사업단   | 인력파견형 사업단 | 시니어인턴십     | 고령자 친화기업    |
| 월급 20만원 | 월급 10만원 이내 | 월평균 30만원 | 월평균 94만원  | 월평균 87.3만원 | 월평균 123.8만원 |

출처: 김우주(2016) 참조 작성

[그림 4]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수 추이

(단위: 천개)



출처: 김우주(2016) 참조 작성

일부에서는 민간분야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보수수준을 증가시키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김우주(2016)의 연구에서는 소득 중하위층 노인의 사업수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단가를 2배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2016년 현재 7,346억원의 재정규모가 2027년에는 4조 2,923억원 규모로 5.84배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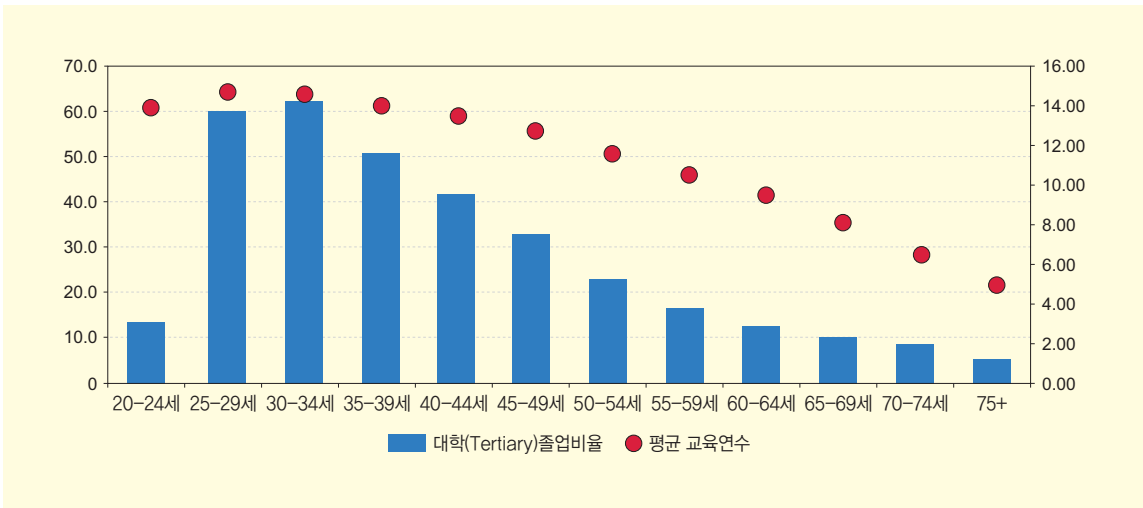
제도의 부재로 인해 현 고령층의 상당수가 공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을 염두에 둘 때, 현재까지 진행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 및 이를 통한 소득지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고령층 일자리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새로이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지원과 같은 복지성 일자리 제공의 확대보다는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머잖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주요대상이 될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세대는 경제성장을 견인한 세대로 지금의 고령층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질적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수혜를 받은 세대이며 교육·기술수준 또한 현재의 고령층보다 높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일자리 및 소득지원 성격의 일자리 제공·지원보다는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은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지원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층의 특성이 변화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지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5] 연령별 교육수준(2010년 기준)

(단위: %, 년)



출처: Barro & Lee

“  
새로이 고령층으로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세대에게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 복지성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기업·국가 측면에서나  
적절하지 않다.

”

새로이 고령층으로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세대에게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 복지성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기업·국가 측면에서나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복지성 일자리사업의 확대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사업 등에 좀 더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은 만 40세 이상의 중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용연장 혹은 채용 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취업훈련과 고용을 알선하는 등 중·고령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성격이 강한 반면,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은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고령자고용촉진사업 주요내용

| 사업(시작년도)               | 내용                                                                                                    |
|------------------------|-------------------------------------------------------------------------------------------------------|
| 고용연장지원금(2004)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를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
| 임금피크제 지원금(2006)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
| 장년친화적 직장만들기 지원사업(2015) |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관리제도 개편 등을 지원                             |
| 장년고용지원금(2013)          |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현장적응력을 높여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공                                            |
| 사회공헌활동지원(2011)         |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중 고령자와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 수요를 매칭               |
| 중장년 취업아카데미(2006)       | 중장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 재설계, 기업맞춤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은퇴 후 일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2006)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 |

주: 구체적 사업내용, 대상, 지원내용 등은 『2016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참조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지원사업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매우미흡’과 ‘미흡’ 등급으로 해당 연도 등급 중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 구직 경험자의 주된 구직경로 중 정부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 수준으로 정부의 오랜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구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기금운용평가 결과

(단위: 개)

|      | 평가대상사업 수(고용보험기금)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2014 | 9                | 1  | 5  | 1  | 2    |
| 2015 | 10               | 3  | 9  | 5  | 0    |

출처: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보고서(Ⅰ) [사업운영부문]』, 각 연도

〈표 8〉 지난 1년간 고령층의 구직경로

(단위: %)

| 구직경로 |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 | 민간 취업 알선기관 | 신문·잡지·인터넷 등 | 사업체 문의·방문 | 친구·친지소개 및 부탁 | 기타  |
|------|----------------------|------------|-------------|-----------|--------------|-----|
| 비율   | 26.1                 | 9.9        | 9.0         | 10.9      | 40.8         | 3.4 |

주: 2016.05. 기준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6.7.)

“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지역에서 창출되고  
고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국가들에서도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고령층 및 장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와 달리 연금제도가 성숙되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들에서는 조기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정부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 등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고령층의 고용률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여기에 독일정부의 정책이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은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Initiative 50plus와 Perspective 50plus라는 정책을 도입·운영하였다.<sup>12)</sup>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는 채용보조금, 직업훈련, 결합임금제도, 그리고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결합임금제도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합임금은 50세 이상의 실업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의 보수가 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보다 적으면 1년차에는 차액의 50%를 보전해 주고 2년차에는 차액의 30%를 지원해 주는 등 차액 중 일부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대기업·공기업 등에서의 경험 보

유자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구직난 완화와 지식전파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낮은 보수로 인해 이와 같은 인력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결합임금과 같은 사례를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게 제도를 적용·확대하여 고령층의 실업기간을 단축하고 재취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지역에서 창출되고 고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방차원에서 고령자 고용확대 프로그램인 Perspective 50plus는 노동시장 정책과 법령 등 고용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건강관리, 주거 등의 정책도 복합적으로 함께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해 운용하였다. 여기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양한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을 연계하여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고령층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공과 민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는 지역기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방정부에 전달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등 연방-지방정부 간의 정책협력 또한 고령층 고용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독자적으로 발굴·운영하였는데, 뉴른베르크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기업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적이고 목표 그룹에 대해 특화된 자격취득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을 창출하였다. 아헨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의 핵심·성장 산업분야인 건강,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요구에 맞추어 고령층 실업자에 대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들을 해당 분야에 고용시

12) Initiative 50plus: 2007년 5월 시행, Perspective 50plus: 2005년 10월 시행

키는 성과를 창출하였다.<sup>13)</sup> 즉, 현장의 니드를 반영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층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업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sup>14)</sup> 이는 고령층 대상 일자리가 고령층의 인구 증가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과 함께 머잖아 취업시장에서 고령층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들의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운용중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중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독일의 결합임금과 같은 제도의 확대·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결합임금으로 인해 전문기술 경험을 소유한 숙련자들의 기술이전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고령층의 실업기간 또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기간 등 설계를 정치화하여 제도운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에서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 특히 생계형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은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비·훈련비 전액 무료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

“  
지나친 복지 차원의  
일자리공급 확대로 인해  
중소득·중기술 이상  
다수의 미래 고령층이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입·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령층의 자산·소득 및 교육·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령층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대상 구분 및 명확한 목적하에 고령층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저기술 특성을 보유한 (초)고령층 및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의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득·중기술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지원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염두에 둘 때, 고령층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은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13) 김상철(2008).

14) 55~79세를 대상으로 한 고용률은 2007년 50.9%에서 2016년 53.7%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실업률은 1.6%에서 2.5%로 증가(통계청 보도자료, 2016.7.)

일자리 관련 니드는 서로 상이한데, 이와 같은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밀한 정책·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취업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특성은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지원을 함으로써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즉, 정부가 현재와 같이 저소득·저기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 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지나친 복지차원의 일자리공급 확대에 의해 중소득·중기술 이상 다수의 미래 고령층이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 『2015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각 연도.  
\_\_\_\_\_, 『2016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016.5.  
관계부처합동,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 2007.  
\_\_\_\_\_,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2012.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I)–사업운영부문』, 2016.05.  
김상철, 「독일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3호, 한

국사회보장학회, 2008.8, pp. 247–274  
김우주,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대한민국정부,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각연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서』, 각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6.05.  
\_\_\_\_\_, 『2016 고령자 통계』, 2016.09.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10.5.10.  
\_\_\_\_\_,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16.7.2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2016.08.

고용노동통계 <http://laborstat.moel.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48>  
Barro & Lee [www.barrolee.com](http://www.barrolee.com)  
OECD.Stat. <http://stats.oecd.org>.



#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동향 17-1

#### > 아메리카

#### [미국-2016년 소득신고 기한 및 주요 세법개정내용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17년 1월 3일 2016년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발표함<sup>1)</sup>
  - 2016년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1) 올림픽 상금 비과세, 2) 장애인 저축계좌(able account) 납입액 인출 시 비과세, 3) 퇴직연금계좌(IRA) 납입액 중도인출 시 다른 계좌로의 이전기한 연장, 4)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변경이 있음
- 2016년에 올림픽 메달, 상금을 받는 자는 조정된 총소득(AGI)이 1백만달러 미만인 경우 올림픽 메달 가치 또는 상금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부 별도신고 시 AGI가 50만달러 미만인 경우 올림픽 메달가치 및 상금소득에 과세되지 않음
- 2016년부터 장애인 양육비 목적으로 장애인 저축계좌 납입액 인출 시 비과세혜택이 적용됨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되었으나 2016년부터 가입이 가능하였음
- 가입대상자는 26세 이전 장애인판을 받은 자이며, 연간 14,000달러를 한도로 불입이 가능하고, 장애아동의 교육, 교통, 건강, 고용훈련 등 장애아동과 관련된 비용인출 시 운영 소득에 과세하지 않음
- 2016년 8월부터 자기검증제도가 도입되어 은행에 퇴직연금계좌(IRA) 납입액 중도인출 시 은행에 서류만 제출함으로 중도인출액을 다른 IRA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기한 연장이 가능함
  - 기존에는 IRA납입액 중도인출 시 다른 퇴직연금계좌로 60일 이내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 인출금액에 과세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요청건당 1만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sup>2)</sup>
  - 자기검증제도는 국세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승인 및 수수료 부담 없이 다른 IRA로 이전해야 하는 기한의 연장을 허용함
    - 국세청이 정한 사유로는 가족의 사망·질병, 주거지 침해, 송달 오류, 금융기관 오류 등의 사유가 있음
- 2016년 해외금융계좌의 신고(FBAR)<sup>3)</sup>기한은 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개정되었으며, 자동연장제

1)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uac/newsroom/2016-tax-changes>, IBFD, United States-IRS issues Fact Sheet regarding 2016 tax changes (13 Jan, 2017), News IBFD.

2)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시 비과세를 위한 유예기간 관련한 정보는 미 국세청의 "Retirement Plans FAQs relating to Waivers of the 60-day Rollover Requirement"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retirement-plans-faqs-relating-to-waivers-of-the-60-day-rollover-requirement#5>)

3)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으로 2016년 중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1만달러를 초과한 날이 있는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함

도 도입으로 기한 내 미제출 시 2016년 10월 16일로 자동연장 됨

- 기존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은 6월 30일이었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자동 기한연장 제도가 별도로 없었으나 2016년부터 자동연장제도가 도입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실효세율은 세액감면, 공제, 손실상계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세율임

- 비용공제 허용 금액은 로열티 지급액에서 실효세율이 25%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금액임
- 비용공제 허용금액=로열티 지급액×(실효세율/25%)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 유럽

### [독일-그룹 간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액의 비용공제 제한]

- 독일 재무부는 2016년 12월 20일 그룹 간 로열티 지급 시 특정국가에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액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의 초안을 발표함<sup>4)</sup>
  - 이 규정은 OECD에서 BEPS Action 5 권고사항을 2021년까지 적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Action 5의 권고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로열티 소득을 지급하여 독일에서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임
  - 이번 개정을 통해 3천만유로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지급하는 지급액부터 적용할 예정임
-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국가는 BEPS Action 5의 권고사항인 연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중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 25% 미만인 국가임

### [벨기에-2017년 예산안 최종 승인]

- 벨기에 정부는 2016년 12월 29일 2017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조세회피방지 목적의 세법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sup>5)</sup>
  - 2017년 예산안은 필요 경비액의 70%는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20%는 세제조치를 통해, 10%는 다른 소득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 언급함<sup>6)</sup>
  - 직접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 주식내부거래 시 배당소득 과세, 종업원의 업무용차량 사적이용 시 비용 불공제 비율을 인상하는 반면 투기세(speculation tax)의 도입은 철회함
  - 간접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주식거래세 부과대상 확대가 있음
  - 해당 세법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7%에서 30%로 인상함
  - 2016년에 25%에서 27%로 인상하였으며, 2017년

4) Taxnotes, "Germany-Proposal would disallow deductions involving harmful IP boxes," 2017.01.02.

5) IBFD, "Belgium-Program law containing various tax measures-gazetted," 2016.12.29.

6) Taxnotes, "Belgium-Government Reaches Agreement on Budget, Pushes Tax Obstacles Aside," 2016.10.24., 벨기에 예산안은 2016년 10월 15일 처음 발표하였으며 의회승인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29일 최종 승인한 것임



에 다시 30%로 인상하는 것임

-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 주식양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배당가능 소득으로 보아 주주에게 지급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자본이득은 기업이 구입한 주식가액과 주식공정가치의 차액이며, 개인이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회피가 가능함
  - 따라서, 주식 공정가치와 기업이 구입한 주식가액 차이를 배당가능소득으로 보아 향후 주주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함
- 종업원이 회사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적으로 이용한 차량비용의 비용불공제 비율을 현행 17%에서 40%로 인상함
  - 종업원이 사적으로 이용한 회사용 차량비용은 현물급여(benefits in kinds)로 보아 종업원의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은 사적으로 이용한 회사용 차량비용을 공제함
    - 차량비용은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유류비용, 통행료, 주차료 등을 포함함
-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통해 증권거래 시에도 증권거래세(stock exchange tax)를 부과하며, 증권거래세 과세상한액을 인상함
  - 현재까지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통해 증권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었음
  - 외국은행, 중개인에게 보고의무를 지우는 것에 한계가 있어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 금액을 자가

측정하고 납부해야 함

-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경우 주식가액 1,000유로당 2.7유로를 부과하며, 채권의 경우 채권금액 1,000유로당 0.9유로, 기타 투자펀드의 경우 1,000유로당 10유로를 부과함<sup>7)</sup>
- 증권거래세 과세상한액은 주식의 경우 800유로에서 1,600유로로 인상하며, 채권의 경우 650유로에서 1,300유로로, 기타 투자펀드의 경우 2,000유로에서 4,000유로로 인상함
- 투기거래로 발생하는 특정 단기자본이득에 33%의 세율로 과세하는 투기세를 폐지함
  - 투기세는 2016년 신규 도입되었으며, 상장주식, 옵션, 워런트, 기타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사업활동 외 목적으로 구매하고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었으나 2017년부터 이를 폐지함
  - 현행제도에서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16.5%의 세율로 과세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sup>7)</sup> IBFD, "Belgium—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 14.2.2, 2016.09.01.



## [영국-다자간조세협약 참여 계획 발표]

- 영국 정부는 BEPS Action 15 다자간조세협약<sup>8)</sup>에 대해 각 조문별 참여나 유보<sup>9)</sup> 계획을 발표<sup>10)</sup>함
  - OECD 다자간조세협약은 BEPS Action 2 혼성불일치의 해소, BEPS Actio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 BEPS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해소 방지, BEPS Action 14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의 마련의 네 가지 부분과 관련된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됨
  - 영국은 최소기준<sup>11)</sup>을 제외하면 고정사업장 관련 조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문에 유보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영국은 다자간조세협약 체결 후 현재 발효 중인 양자간조세조약에 다자간조세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할 계획임
- 영국은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에 유보를 표명<sup>12)</sup>할 계획임
  - 다자간조세협약 제12조에서 위탁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전략을 이용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다자간조세협약 제13조 고정사업장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특정 사업행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와 관련한 내용에 대부분 유보를 표명할 계획이나, 일부 항목은 채택할 계획임

-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다만, 다자간조세협약 제13조 제6항과 제4항의 인위적으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분할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채택할 예정임
- 또한, 다자간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의 특정 기업과 긴밀하게 관련된 인(person)<sup>13)</sup>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채택할 예정임
- 다자간조세협약 제14조 계약분할을 통한 고정사업장 과세회피 방지에 관해서는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분쟁해결장치와 관련하여 상호합의와 강제중재 제도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중재기간에 대해서는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한 다자간조세협약 제16조 내용을 모두 채택할 예정임
  - 최소요구기준이지만 국내법 등으로 이행이 가능한 경우 유보를 통하여 상호합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나, 유보 없이 전체 내용을 채택할 예정임

8) OECD는 2016년 11월 24일 다자간조세협약 각 조문의 세부내용과 최소기준 항목과 유보 가능한 항목을 발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2-2호, [http://www.kipt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OECD-세원잠식과-소득이전-방지를-위한-다자간협약-공개/524667](http://www.kipt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OECD-세원잠식과-소득이전-방지를-위한-다자간협약-공개/524667))

9) 유보를 표명한 조문이나 조항에 대해서는 다자간조세협약에 참여한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0) Tax Notes International, 2017.01.09., "U.K. to reject most revised PE standards in Multilateral Instrument," pp. 163-166.

11) BEPS Action은 모두 15개이며, 이 중에서 강제이행 의무가 부여된 권고안을 가리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이라 함. 최소기준 중에서 다자간조세협약에 포함된 항목은 BEPS Actio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와 BEPS Action 14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의 마련임

12) 유보를 표명할 경우 다자간조세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13) 개인과 법인을 의미함



- 한편, 다자간조세협약에서 중재기간을 3년으로 제안<sup>14)</sup>하였으나, 영국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 2년의 중재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항목에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법정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중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내용<sup>15)</sup>과 중재 범위<sup>16)</sup>에 관하여 다자간조세협약의 제안에 따를 것임
- 조세조약 남용방지와 관련하여 혜택의 제한(LOB)과 주요목적 기준(PPT) 중에서 주요목적 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며, 그 밖의 항목은 대부분 유보를 표명할 예정임
  - 조세조약 남용과 관련하여 다자간조세협약 제8조의 배당거래 이전 거래 방지와 제9조 부동산주식 양도거래 과세에 관하여 유보를 표명할 예정임
  - 다자간조세협약 제10조 제3국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한 조약남용 방지 규정에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혼성불일치와 관련하여 다자간조세협약 제3조의 도관단체와 제4조의 이중거주자 단체의 거주국가 결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채택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 [핀란드-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관련 법안 확정]

- 2016년 11월 핀란드 국회는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제출에 관한 법안을 확정함<sup>17)</sup> 18)
- 핀란드는 국가별보고서뿐만 아니라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점에서 EU 지침<sup>19)</sup>보다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강화함
-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국가별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국가별보고서는 핀란드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하며, 직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를 초과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함
-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핀란드 과세당국에 보고대상자임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sup>20)</sup>
  - 추후 핀란드 과세당국은 통지의 내용, 형식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임
- 핀란드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14) 다자간조세협약 제19조 제11항

15) 다자간조세협약 제19조 제12항

16) 다자간조세협약 제28조

17)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finland—implements-country-by-country-reporting-in-accordance-with-beps-action-13>(검색일자: 2017년 1월 16일)

18) 핀란드 재무부는 2015년 12월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도입안을 발표했으며, 2016년 6월 수정안을 발표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 대응지원센터, [http://www.kiptf.re.kr/Beps/sub/sub4detail.aspx?serial\\_no=142&typeno=2&Search=undefined&SearchWord=&page=1](http://www.kiptf.re.kr/Beps/sub/sub4detail.aspx?serial_no=142&typeno=2&Search=undefined&SearchWord=&page=1)(검색일자: 2017년 1월 16일)]

19) EU Directive 2016/881

20) 개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보고서의 제출대상자를 국세청에 통지해야 하며, 이후 2017년 12월 31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다자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한 국가이므로 제출된 국가별보고서는 다른 다자협정 체약국과 교환될 예정임

- 마스터파일은 해당 사업연도 동안 다국적기업 그룹 내 기업 간 총거래금액이 50만유로를 초과할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함
  - 현행 핀란드 세법상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 규정이 마스터파일에도 적용됨
- 로컬파일은 해당 사업연도 동안 다국적기업 그룹 사이에 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이 제출대상이며, 제출이 면제되는 거래 하한금액은 없다는 점이 마스터파일과 다름
  - 다만,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기업 사이의 총거래금액이 50만유로 이하면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 비교분석(comparability analysis)과 이전가격 방법에 대한 설명 등을 생략하여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음
  - 로컬파일의 제출기한은 마스터파일과 동일함
-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5,000유로까지 가산세가 부과됨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대상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 [룩셈부르크-예산안 등 법안 확정]

- 룩셈부르크 정부가 2016년 10월 발표한 예산안<sup>21)</sup>이 2016년 12월 22일 의회를 통과함<sup>22)</sup>
  - BEPS Action 8-10관련 이전가격 규정, 비영리 단체에 대한 부동산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법안이 확정됨
  - 그 밖에 2016년 9월 발표한 국가별보고서 개정 법안이 확정됨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관계회사 사이에 무형자산이나 위험을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적 활동을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BEPS Action 8-10 권고사항을 기존 이전가격 관련 규정에 반영함
  - 정상가격 관련 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전가격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
  - 관계회사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제3자 사이의 거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관계회사 사이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법에 추가함
  - 특히 비교가능분석(comparability analysis)을 강조함
    - 비교가능분석에서는 쟁점이 되는 거래와 유사

21)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12\\_lu\\_1.html&WT.z\\_nav=crosslinks](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12_lu_1.html&WT.z_nav=crosslinks)(검색일자: 2017년 1월 16일)

22)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2-22\\_lu\\_1.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6-12-22\\_lu\\_1](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2-22_lu_1.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6-12-22_lu_1)(검색일자: 2017년 1월 16일)



한 거래를 정확하게 매치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경제적 조건과 환경을 고려함

- 중요한 경제적 조건과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조건, 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하는 기능(사용되는 자산과 부담 위험을 고려), 제공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특징, 각 당사자가 참여한 시장과 각 당사자의 경제적 환경과 각 당사자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확인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27일 룩셈부르크 국세청은 2017년 1월 1일부터 룩셈부르크에서 그룹 간 재무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따라야 하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시<sup>23)</sup>함
- 동 가이드라인에는 그룹 관계회사 간 재무활동의 정의, 관계회사의 정의, 비교가능분석과 기능분석을 포함한 내부 재무활동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원칙, 위험분석, 룩셈부르크의 실질우선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자본과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는 EU 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세와 조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 룩셈부르크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던 부동산세 면세

규정을 EU 역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에도 적용함

- 룩셈부르크로 이주하였으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룩셈부르크에 세금 납부를 위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EU 회원국 거주자는 예치 대상 비거주자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상 자발적 등록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연 매출액 25,000유로 미만인 기업에서 30,000유로 미만인 기업으로 개정함

- 연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강제적 등록의무가 없고 자발적 등록의무만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발적 등록이 가능한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sup>24)</sup>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그 밖에 2016년 12월 13일 의회는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개정안<sup>25)</sup>을 확정함<sup>26)</sup>

- 확정된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개정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지연 신고나 무신고 가산세<sup>27)</sup> 대상에 룩셈부르크 회사가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됨<sup>28)</sup>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23)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2-28\\_lu\\_1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2-28_lu_11.html&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7년 1월 16일)

24) <http://www.guichet.public.lu/entreprises/en/fiscalite/tva/inscriptions-declarations/inscription-tva/index.html>(검색일자: 2017년 1월 25일)

25) 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룩셈부르크-국가별보고서-법률초안-제출/524475](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룩셈부르크-국가별보고서-법률초안-제출/524475)(검색일자: 2017년 1월 16일)

26)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2-21\\_lu\\_1.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6-12-21\\_lu\\_1](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2-21_lu_1.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6-12-21_lu_1)(검색일자: 2017년 1월 16일)

27) 지연신고나 무신고의 경우 25만유로까지 가산세가 부과됨

28)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luxembourg-s-parliament-adopts-draft-law-on-country-by-country-reporting>(검색일자: 2017년 1월 16일)



### [프랑스-우회수익세 위헌 결정]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2017년 예산법(Budget Law)에 포함된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 tax)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sup>29)</sup>
  - 프랑스 국회는 2016년 12월 20일 우회수익세가 포함된 2017년 예산안을 의결함
  - 그러나, 우회수익세 법안은 국회 의결 이후 법 적용에 앞서 실시된 헌법재판소의 심의결과 위헌으로 판정되어 입법이 취소됨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우회수익세 법안이 프랑스 과세당국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법인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프랑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함
  - 프랑스 헌법 제34조는 모든 종류의 세금에 대한 과세소득, 세율, 징수절차는 법령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sup>30)</sup>
  - 이에 반해 우회수익세 법안은 세무조사 시에 프랑스 과세당국의 임의적 추정에 기반하여 과세당국이 외국법인에 프랑스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sup>31)</sup>
  - 헌법재판소는 우회수익세 법안이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부과할 납세자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당히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 동 법안이 헌법 제34조에 의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욱 회계사)

### [이탈리아-2017년 예산법 발표]

- 이탈리아 정부는 2016년 12월 21일 국회의결을 통과한 2017년 예산법을 공개하였으며, 동 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17년 1월 1일 발효됨<sup>32)</sup>
  -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특례, R&D 과세특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를 대신하는 대체세 도입 등이 있음
  -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으로는 VAT연결납세제도 도입이 있으며,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해외 고액자산가 유입을 위한 과세특례제도가 있음

#### 가. 법인세

- 2017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27.5%에서 3.5%p 인하하여 24%의 세율을 적용함
  -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은 24%의 세율에 3.5%의 추가세금(surcharge)을 부과하여 기존 세율인 27.5%가 유지됨
    - 다만, 자금운용법인은 27.5%의 세율이 아닌 24%의 세율을 적용함

29) Tax Notes International, Vol. 8, Number 1, January 2, 2017, pp. 56-57.

30) Multinational Tax & Transfer Pricing News, <http://mnnetax.com/frances-diverted-profit-tax-ruled-unconstitutional-18873>(검색일자: 2017.01.23.)

31) EY Global Tax Alert, December 30, 2016.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French\\_diverted\\_profits\\_law\\_struck\\_down\\_by\\_Constitutional\\_Court/\\$FILE/2016G\\_04583-161Gbl\\_French%20diverted%20profits%20law%20struck%20down%20by%20Constitutional%20Court.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French_diverted_profits_law_struck_down_by_Constitutional_Court/$FILE/2016G_04583-161Gbl_French%20diverted%20profits%20law%20struck%20down%20by%20Constitutional%20Court.pdf)(검색일자: 2017.01.23.)

32) Italy-Budget Law for 2017-published(29 Dec. 2016), News IBFD., EY Global Tax Alert, Italian Parliament approves 2017 budget law, December 16, 2016.



- 2016년 예산법에 따른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특례 적용을 연장함
  - 세법상 연간 감가상각률이 6.5%를 초과하는 유형자산으로 2018년 6월 30일까지 취득 또는 금융리스계약으로 임차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의 40%를 증액하여 감가상각을 허용함(장부가액의 140% 상각 허용)
  - 이탈리아 정부의 산업성장 계획에 따른 디지털 또는 과학기술 설비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의 150%를 증액하여 감가상각을 허용함(장부가액의 250% 상각 허용)
  - 이탈리아 정부의 산업성장 계획에 따른 소프트웨어, IT시스템, 플랫폼 등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의 40%를 증액하여 상각을 허용함(장부가액의 140% 상각 허용)
- R&D 과세특례 적용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R&D 특례 대상 비용을 확대함
  - 2012-2014 과세연도의 평균 R&D비용을 초과하는 R&D비용의 50%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허용함
  - R&D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의 5백만유로에서 2천만유로로 상향조정함
  - 또한, 적격 R&D비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단체의 연구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함
- 상장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피인수 자회사의 결손금을 인수법인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탈리아 내국 상장법인이 내국법인인 피인수법

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피인수 자회사의 결손금을 인수법인인 상장법인에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 결손금 이전은 주식 취득 이후 최초 3년간 발생하는 결손금에 한해 적용함

- 비상장법인 양도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대신하는 대체세 도입함

- 2017년 1월 1일 현재 이탈리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이탈리아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8%의 대체세(substitute tax)를 납부함으로써 추후 관련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대체세의 과세표준은 취득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2017년 1월 1일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함
- 대체세 납부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일괄 납부하거나, 2017년 6월 30일부터 3년간 연납할 수 있음

## 나. 부가세

- EU의 부가가치세("VAT") 지침에 따른 VAT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 EU VAT지침<sup>33)</sup>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VAT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함
  - VAT 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하는 관계사 그룹은 단일 VAT 납세자로 취급되어, 그룹 내부 거래는 VAT가 과세되지 않으며 제3와의 거래는 단일 VAT 그룹의 거래로 처리함
  - VAT 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sup>33)</sup> Article 11 of the EU Directive 2006/112/CE



- 경제적, 조직적 연관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무적 연관성: 50%를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지분관계
  - 경제적 연관성: 관계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유사하거나 보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이어야 함
  - 조직적 연관성: 관계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함

#### 다. 개인소득세

- 해외 고액자산가 유입을 위해 해외로부터 이탈리아로 이주하는 개인의 해외원천소득을 과세면제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함
  - 이탈리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숙주주의 과세제도(territorial tax system)를 적용하여 15년간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는 대신 매년 10만유로의 대체세(일반 소득세를 대신하는 대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동 특례제도를 적용 받는 납세자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당 25,000유로의 대체세를 납부하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동 특례규정은 과거 10년 중 최소 9년 동안 비거주자인 개인에 한해 적용 신청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 ▶ 아시아

#### [중국-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2015년 연차 보고서 발간]

- 중국 국가세무총국(China's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2016년 12월 23일 발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34)</sup>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주요 거래는 유형자산의 구입 및 판매 거래형태이지만,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사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도 증가하고 있음
  - 쌍방적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 국가가 차지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는 2005-2015기간 동안 총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12.2%만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방적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일반적으로 완료까지 1년 미만이 소요되며, 2년 이내에 65.3%가 완료됨
  - 중국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에서 채택된 가장 일반적인 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임
- 일방적, 쌍방적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진행절차를 의사전달, 적용, 타결 단계별로 실적을 제시하고 있음
  - 2015년에 타결된 중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일방적 APA 76건, 쌍방적 APA 49건임

34) EY Tax Insights, <http://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china-issues-2015-advance-pricing-agreement-annual-report.aspx>(검색일자: 2017.1.17.)



〈표 1〉 2015년 중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단계별 현황

(단위: 건)

| 진행 단계       |        | 일방APA | 쌍방APA | 합 계 |
|-------------|--------|-------|-------|-----|
| 의사전달(사전협의)  |        | 4     | 101   | 105 |
| 적용(검토 및 협상) |        | 4     | 40    | 44  |
| 타결          | (서명전)  | 1     | 2     | 3   |
|             | (시행중)  | 19    | 22    | 41  |
|             | (기간만료) | 57    | 27    | 84  |
|             | 소 계    | 77    | 51    | 128 |
| 합 계         |        | 85    | 192   | 277 |

출처: EY Tax Insights,

<http://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china-issues-2015-advance-pricing-agreement-annual-report.aspx>(검색일자: 2017.1.17.)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 [대만-담뱃세,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상 승인]

- 대만 의회는 1월 11일 장기요양보험 재정 조달을 위해 담뱃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상을 승인함<sup>35) 36)</sup>
  - 현재 대만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0% 단일세율이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10%, 15%, 20% 3단계로 신설됨
    - 각종 공제항목 반영한 후 상속가액이 50백만타이완달러~100백만타이완달러는 15%, 100백만타이완달러 초과 시 20%의 세율이 적용됨<sup>37)</sup>
  - 담뱃세는 1,000개비당 590타이완달러에서 1,000개비당 1,590타이완달러로 인상되어, 담배 한 갑(20개비)당 가격이 20타이완달러 인상됨

- 대만 재무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과 담뱃세 인상으로 인하여 약 288억타이완달러의 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sup>38)</sup>
  - 증가된 세수입은 2017년 장기요양보험 플랜 2.0(Long-term Care Plan 2.0) 재정에 사용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 [싱가포르-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17년 1월 12일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함<sup>39) 40)</sup>
  - 싱가포르는 실제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장소 및 가치창출 장소에서 이윤을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35) Tax News, [http://www.tax-news.com/news/Taiwan\\_Hikes\\_Inheritance\\_Cigarette\\_Taxes\\_73208.html](http://www.tax-news.com/news/Taiwan_Hikes_Inheritance_Cigarette_Taxes_73208.html)(검색일자: 2017.1.17.)36) IBFD, <http://www.ibfd.org/IBFD-Tax-Portal/Tax-News-Service>(검색일자: 2017.1.17.)37) <http://www.chinapost.com.tw/taiwan/national/national-news/2016/10/21/481703/Executive-Yuan.htm>(검색일자: 2017.2.1.)38) 대만뉴스, <http://www.taiwannews.com.tw/en/news/3067912>(검색일자: 2017.1.29.)39) IBFD, <http://www.ibfd.org/IBFD-Tax-Portal/Tax-News-Service?page=2>(검색일자: 2017.1.17.)40)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default.aspx?Latest+Updates>(검색일자: 2017.1.30.)



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자산 및 위험측정의 기능적 분석에 대한 지침을 강화함

- 이전가격 결정결과를 가치창출과 연계하도록, 싱가포르의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가치사슬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함
  - 싱가포르의 이전가격 지침은 OECD 이전가격 지침서와 거의 유사함

- 싱가포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은 작성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싱가포르 납세자인 경우로 직접 사업연도 연결기준 매출금액이 1,125 백만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임

- 사업연도 말 이후 1년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보고서 제출형식은 BEPS 권고안에 따라 3개의 표로 구성됨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규정의 처리가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싱가포르 과세관청의 다양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였음

- 싱가포르 과세관청이 외국 과세관청과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BEPS 5(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sup>41)</sup>를 참조하여 강화된 지침을 설명함

-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에 제

시함

- 상호합의절차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납세자, 거주하지 않지만 싱가포르에 지점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상호합의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s)의 상호합의절차 조항에 명시된 기한(예: 3년)내에 시작해야 함
-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때 4단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24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1단계(MAP 신청):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 신청서를 과세관청에 제출
  - 2단계(평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청서 평가
  - 3단계(검토 및 협상): 과세관청과 외국 과세관청 합의 도달 후 1개월 이내에 납세자에게 내용과 방법 등을 논의
  - 4단계(이행):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상호합의절차 결과에 따라 이행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41)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융해조세제도 대응



## 국제기구

### [OECD-BEPS Action 4 추가 지침 발표]

- OECD는 2016년 12월 22일 BEPS Action 4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함<sup>42)</sup>
  - 2015년 10월 발표된 Action 4 최종보고서상의 그룹비율규정(group ratio rule)에 대한 설계 및 운영 관련 사항과 은행 및 보험업종에 대한 이자공제제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추가 지침을 제시함
- Action 4 최종보고서의 그룹비율규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함
  - Action 4 최종보고서는 과도한 이자비용 공제로 발생하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고정비율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규정을 제안함
  - 추가 지침은 상기 그룹비율규정과 관련하여 그룹의 제3자 순이자비용의 계산, 그룹의 EBITDA<sup>43)</sup> 산출, 마이너스 EBITDA를 보이는 그룹에 대한 접근법 등 그룹비율규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함
- 또한, 은행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이자공제제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함
  - 일반적으로 은행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동

업종에 대한 최소 자본 규정 등 각종 규제와 사업상의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통한 BEPS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음

- 다만, 동 업종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관련 산업의 규제 등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은행 및 보험업 영위 법인에 대한 이자공제제한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각 국가의 관련 규제 등을 고려하여 공통규정(고정비율 또는 그룹비율규정)이 아닌 업종의 특성에 맞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음
  - 또한, 각 국가의 은행 및 보험업의 사업활동과 제반 규제 등을 검토하여 동 업종의 BEPS 관련 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공제제한 규정 적용을 면제할 수도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 [OECD-BEPS Action 6에 대한 협의문서 공개]

- OECD는 2017년 1월 6일 BEPS Action 6에 대한 협의문서(discussion draft)를 공개함<sup>44)</sup>
  - 본 협의문서는 비집합투자기구(non-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funds)의 조세조약 적용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의견수렴기간은 2017년 2월 3일까지임

42)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additional-guidance-on-action-4-of-the-beps-action-plan-to-curb-international-tax-avoidance.htm>(검색일자: 2017.01.24.)

43)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44) OECD, <http://www.oecd.org/tax/treaties/interaction-between-the-tax-treaty-provisions-of-the-report-on-beps-action-6-and-the-treaty-entitlement-of-non-civ-funds.htm>(검색일자: 2017.01.25.)



- 본 합의문서는 Action 6 최종보고서가 규정하는 조세조약남용방지 방안인 주목적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의 비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요청함
- Action 6 최종보고서는 조세조약남용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조세조약에 혜택의 제한(limitation-on-benefits)규정과 주목적테스트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
- 동 합의문서는 비집합투자기구를 대표적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별 주요목적테스트 규정 적용에 대한 사항을 기술함
  - 비집합투자기구를 지역투자플랫폼회사(regional investment platform),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펀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상기 비집합투자기구에 대한 3가지 예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주요목적테스트규정에 대한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에 반영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 기타

### [칠레-국가별보고서 도입 발표]

- 칠레 국세청은 2016년 12월 28일 국가별보고서 도입을 발표함<sup>45)</sup>
- 칠레는 BEPS Action 13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신고 제도를 도입함

- 본 규정은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신고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기준 매출액이 7.5억유로(해당 사업연도의 12월 31일 기준 환율 적용)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칠레 최종모회사로 함
- 국가별보고서에서는 Action 13 최종보고서의 요구사항과 같이 국가별 소득, 자산, 납부세액 등 재무정보와 사업활동 등을 기술하여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으며, 신고기한은 신고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 [브라질-국가별보고서 최종 규정 공개]

- 브라질 정부는 2016년 12월 29일 국가별보고서 최종 규정을 공개함<sup>46)</sup>
- 브라질은 BEPS Action 13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신고 제도를 도입함
- 본 규정은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신고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기준 매출액이 22억 6천만레알(BRL)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브라질 최종모회사로 함
- 국가별보고서에서는 Action 13 최종보고서의 요구사항과 같이 국가별 소득, 자산, 납부세액 등

<sup>45)</sup> EY Global Tax Alert, January 6, 2017,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Chile\\_establishes\\_Country\\_by\\_Country\\_Reporting/\\$FILE/2017G\\_00067-171Gb\\_TP\\_Chile%20establishes%20Country%20by%20Country%20Reporting.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Chile_establishes_Country_by_Country_Reporting/$FILE/2017G_00067-171Gb_TP_Chile%20establishes%20Country%20by%20Country%20Reporting.pdf) (검색일자: 2017.01.26.)

<sup>46)</sup> Brazil—Implementation of CbC reporting—regulation published(02 Jan, 2017), News IBFD.



재무정보와 사업활동 등을 기술하여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으며, 신고기한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 [남아프리카공화국-국가별보고서 최종 규정 공개]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016년 12월 26일 국가별보고서 최종 규정을 공개함<sup>47)</sup>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EPS Action 13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신고 제도를 도입함
- 본 규정은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신고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sup>48)</sup>
  - 신고의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기준 매출액이 100억란드(ZAR)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종모회사로 함
  - 국가별보고서에서는 Action 13 최종보고서의 요구사항과 같이 국가별 소득, 자산, 납부세액 등 재무정보와 사업활동 등을 기술하여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으며, 신고기한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47) South Africa-Country-by-country (CbC) reporting-final regulations issued(29 Dec. 2016), News IBFD.

48)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No.R. 1598, December 23, 2016,

<http://www.sars.gov.za/AllDocs/LegalDoclib/SecLegis/LAPD-LSec-Reg-2016-07%20-%20Regulation%20R1598%20GG40516%20-%2023%20December%202016.pdf>(검색일자: 2017.01.26.)



## 주요국의 재정동향



IMF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Update 발표(2017.1.16.)<sup>1)</sup>

- 2017-18년 동안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에서 경제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7년 3.4%, 2018년 3.6%로 전망됨(2016년 10월 WEO전망과 동일)

※ 전망은 美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음

- 2017-18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개선은 미국의 2016년 하반기 경제활동 증가와 향후 예상되는 재정부양책 시행을 반영
- 세계경제 성장률 개선에 신흥개도국의 기여는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 조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신흥개도국의 경제전망이 미미하게 하향 조정됨
- 선진국의 2017년과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16년 10월 WEO전망 대비 각각 0.1%p, 0.2%p 상승한 1.9%, 2.0%로 전망됨
  - 미국 재정부양책 시행의 기대 영향으로 미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16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2.3%, 2018년은 0.4%p 증가한 2.5%로 개선이 전망됨
  -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은 2016년 하반기에 기대 이상의 경제활동 성과를 이뤄 2017년 경

제성장률 전망치가 개선됨(2016년 전망 대비 각각 0.1%p, 0.2%p, 0.1%p, 0.4%p 상승)

- 이탈리아와 한국의 전망치는 하향조정된 것으로 언급(구체적인 수치는 미발표)

-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017년 4.5%로 전망되고(2016년 10월 WEO전망 대비 0.1%p 감소), 2018년은 4.8%로 개선 전망(2016년 10월 전망과 동일)
  - 201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정책적 지원 영향으로 2016년 10월 전망 대비 0.3%p 개선된 6.5%로 전망되나, 신용의 급격한 확대와 기업 채무 처리 부진 문제가 우려됨
  - 인도(화폐개혁 후 현금부족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 인도네시아(민간투자 약세), 태국(소비와 관광수입 감소) 등의 아시아 국가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2016년 하반기 경제활동 부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
- 하방 위험요인으로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 일부 선진국의 과잉채무, 신흥개도국 재정 취약성의 지속,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 및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여력 고갈, 중동 및 아프리카 내전과 난민 문제 등을 언급함
- 상방 위험요인인 미국과 중국의 기대치보다 큰 규모의 재정부양책이 시행될 경우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상승으로 투자가 증가할 경우 세계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선진국들은 구조개혁(노동참여율 제고, 기술투자 장려, 일자리 매칭 개선 노력 등)과 함께 경기 대

1)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update/01/?cmpid=obanner>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update/01/pdi/0117.pdf>



응적 거시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신흥개도국은 금융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

- 아웃풋 갭(Output Gap)이 마이너스이고 임금 압력이 낮은 선진국들은 경기대응적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여력 내에서 중기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실행할 필요
-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크지 않은 선진국들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장기 잠재산출량 증대에 재정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함

- 신흥개도국들은 금융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강화를 통해 엄격해지는 세계 금융조건과 급격한 자금이동, 자본유출의 위험에 대응하여 취약성을 감소시킬 필요

〈표 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                                          | 실적치  |      | 전망치  |      | 10월 전망과 차이 <sup>1)</sup> |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7                     | 2018 |
| World Output                             | 3.2  | 3.1  | 3.4  | 3.6  | 0.0                      | 0.0  |
| Advanced Economies                       | 2.1  | 1.6  | 1.9  | 2.0  | 0.1                      | 0.2  |
| United States                            | 2.6  | 1.6  | 2.3  | 2.5  | 0.1                      | 0.4  |
| Euro Area                                | 2.0  | 1.7  | 1.6  | 1.6  | 0.1                      | 0.0  |
| Germany                                  | 1.5  | 1.7  | 1.5  | 1.5  | 0.1                      | 0.1  |
| France                                   | 1.3  | 1.3  | 1.3  | 1.6  | 0.0                      | 0.0  |
| Italy                                    | 0.7  | 0.9  | 0.7  | 0.8  | -0.2                     | -0.3 |
| Spain                                    | 3.2  | 3.2  | 2.3  | 2.1  | 0.1                      | 0.2  |
| Japan <sup>2)</sup>                      | 1.2  | 0.9  | 0.8  | 0.5  | 0.2                      | 0.0  |
| United Kingdom                           | 2.2  | 2.0  | 1.5  | 1.4  | 0.4                      | -0.3 |
| Canada                                   | 0.9  | 1.3  | 1.9  | 2.0  | 0.0                      | 0.1  |
| Other Advanced Economies <sup>3)</sup>   | 2.0  | 1.9  | 2.2  | 2.4  | -0.1                     | 0.0  |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 4.1  | 4.1  | 4.5  | 4.8  | -0.1                     | 0.0  |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2.8 | -0.1 | 1.5  | 1.8  | 0.1                      | 0.1  |
| Russia                                   | -3.7 | -0.6 | 1.1  | 1.2  | 0.0                      | 0.0  |
| Excluding Russia                         | -0.5 | 1.1  | 2.5  | 3.3  | 0.2                      | 0.4  |
|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 6.7  | 6.3  | 6.4  | 6.3  | 0.1                      | 0.0  |
| China                                    | 6.9  | 6.7  | 6.5  | 6.0  | 0.3                      | 0.0  |
| India <sup>4)</sup>                      | 7.6  | 6.6  | 7.2  | 7.7  | -0.4                     | 0.0  |
| ASEAN-5 <sup>5)</sup>                    | 4.8  | 4.8  | 4.9  | 5.2  | -0.2                     | 0.0  |
|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           | 3.7  | 2.9  | 3.1  | 3.2  | 0.0                      | 0.0  |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0.1  | -0.7 | 1.2  | 2.1  | -0.4                     | -0.1 |
| Brazil                                   | -3.8 | -3.5 | 0.2  | 1.5  | -0.3                     | 0.0  |
| Mexico                                   | 2.6  | 2.2  | 1.7  | 2.0  | -0.6                     | -0.6 |

〈표 1〉의 계속

(단위: %)

|                                                        | 실적치   |       | 전망치  |      | 10월 전망과 차이 <sup>1)</sup> |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7                     | 2018 |
| Middle East, North Africa, Afghanistan and Pakistan    | 2.5   | 3.8   | 3.1  | 3.5  | -0.3                     | -0.1 |
| Sub-Saharan Africa                                     | 3.4   | 1.6   | 2.8  | 3.7  | -0.1                     | 0.1  |
|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 4.6   | 3.7   | 4.7  | 5.4  | -0.2                     | 0.2  |
| World Growth Based on Market Exchange Rates            | 2.6   | 2.4   | 2.8  | 3.0  | 0.0                      | 0.1  |
| World Trade Volume(goods and services) <sup>6)</sup>   | 2.7   | 1.9   | 3.8  | 4.1  | 0.0                      | -0.1 |
| Advanced Economies                                     | 4.0   | 2.0   | 3.6  | 3.8  | -0.1                     | -0.3 |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 0.3   | 1.8   | 4.0  | 4.7  | 0.1                      | 0.4  |
| Commodity Prices(U.S. dollars)                         |       |       |      |      |                          |      |
| Oil <sup>7)</sup>                                      | -47.2 | -15.9 | 19.9 | 3.6  | 2.0                      | -1.2 |
| Nonfuel                                                | -17.4 | -2.7  | 2.1  | -0.9 | 1.2                      | -0.2 |
| Consumer Prices                                        |       |       |      |      |                          |      |
| Advanced Economies                                     | 0.3   | 0.7   | 1.7  | 1.9  | 0.0                      | 0.0  |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sup>8)</sup> | 4.7   | 4.5   | 4.5  | 4.4  | 0.1                      | 0.2  |

참고: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2016년 11.4일부터 12.2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주: 1)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6 전망치와의 차이

2) 2016년 12월에 발표된 일본의 국민계정 개정에 따른 수치

3)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4) 실적/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를 기초, 2011년부터 2011-12년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한 시장가격 기준 GDP

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6) 수출과 수입 생산물의 산술 평균

7)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 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6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42.7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17년 51.2달러, 2018년은 53.1달러

8)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7, Table 1.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 OECD

- OECD, 2016년 3분기 OECD 국가 GDP 성장률의 기여도 발표(2017.1.10.)<sup>2)</sup>
  - (OECD 전체) 2016년 3분기 OECD 국가 전체의 GDP 성장률은 재고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다소 증가
    - (성장률) OECD 전체 국가의 2016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0.5%로 전분기 대비 0.1%p 증가
    - (기여도) 각 요인별 기여도는 전분기에 비해 민

간소비와 투자는 감소, 정부소비는 동일, 순수출은 증가했으며 특히 재고증감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됨

- (G7 국가) G7 국가의 대부분은 2016년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나 국가별 기여도 요인에는 차이가 있음
  - (캐나다) 순수출 기여도의 개선에 힘입어 3분기 GDP 성장률이 0.9%로 전분기 대비 상당히 증가
  - (미국) 민간소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기여도가 증가하면서 3분기 GDP 성장률이 0.9%로

〈표 2〉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         |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총고정 자본형성 | 순수출  | 재고증감 | GDP 성장률(%) |
|---------|-------|------|------|----------|------|------|------------|
| OECD 전체 | Q2 16 | 0.5  | 0.1  | 0.1      | 0.0  | -0.2 | 0.4        |
|         | Q3 16 | 0.2  | 0.1  | 0.0      | 0.1  | 0.1  | 0.5        |
| 캐나다     | Q2 16 | 0.3  | 0.3  | 0.0      | -1.3 | 0.6  | -0.3       |
|         | Q3 16 | 0.4  | -0.1 | -0.1     | 0.4  | 0.2  | 0.9        |
| 프랑스     | Q2 16 | 0.0  | 0.1  | 0.0      | 0.5  | -0.8 | -0.1       |
|         | Q3 16 | 0.1  | 0.1  | 0.1      | -0.6 | 0.6  | 0.2        |
| 독일      | Q2 16 | 0.1  | 0.2  | -0.3     | 0.5  | -0.1 | 0.4        |
|         | Q3 16 | 0.2  | 0.2  | 0.0      | -0.3 | 0.0  | 0.2        |
| 이탈리아    | Q2 16 | 0.1  | -0.1 | 0.0      | 0.3  | -0.2 | 0.1        |
|         | Q3 16 | 0.1  | 0.0  | 0.1      | -0.1 | 0.1  | 0.3        |
| 일본      | Q2 16 | 0.1  | -0.2 | 0.4      | -0.1 | 0.2  | 0.5        |
|         | Q3 16 | 0.2  | 0.1  | 0.0      | 0.3  | -0.3 | 0.3        |
| 영국      | Q2 16 | 0.5  | 0.0  | 0.2      | 0.3  | -0.4 | 0.6        |
|         | Q3 16 | 0.5  | 0.0  | 0.1      | -1.2 | 1.2  | 0.6        |
| 미국      | Q2 16 | 0.7  | 0.0  | -0.1     | 0.0  | -0.3 | 0.4        |
|         | Q3 16 | 0.5  | 0.1  | 0.0      | 0.2  | 0.1  | 0.9        |

주: Contributions may not sum to GDP growth due to rounding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sup>2)</sup> 출처: OECD, <http://www.oecd.org/newsroom/contributions-to-gdp-growth-second-quarter-2016-oecd.htm>

전분기 대비 증가

- (이탈리아) 재고증감의 기여도 개선에 힘입어 3분기 GDP 성장률이 0.3%로 전분기 대비 다소 증가
- (프랑스) 순수출 기여도의 악화에도 재고증감 기여도가 상당히 개선되어 3분기 GDP 성장률(0.2%)이 전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됨
- (영국) 순수출 기여도의 악화와 재고증감 기여도의 개선이 상쇄되어 3분기 GDP 성장률이 0.6%로 전분기와 동일
- (일본) 재고증감과 투자의 기여도 감소가 순수출, 정부소비, 민간소비의 기여도 개선보다 크

게 나타나며 3분기 GDP 성장률이 0.3%로 전분기 대비 둔화됨

- (독일) 투자, 재고증감의 기여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3분기 GDP 성장률이 0.2%로 전분기 대비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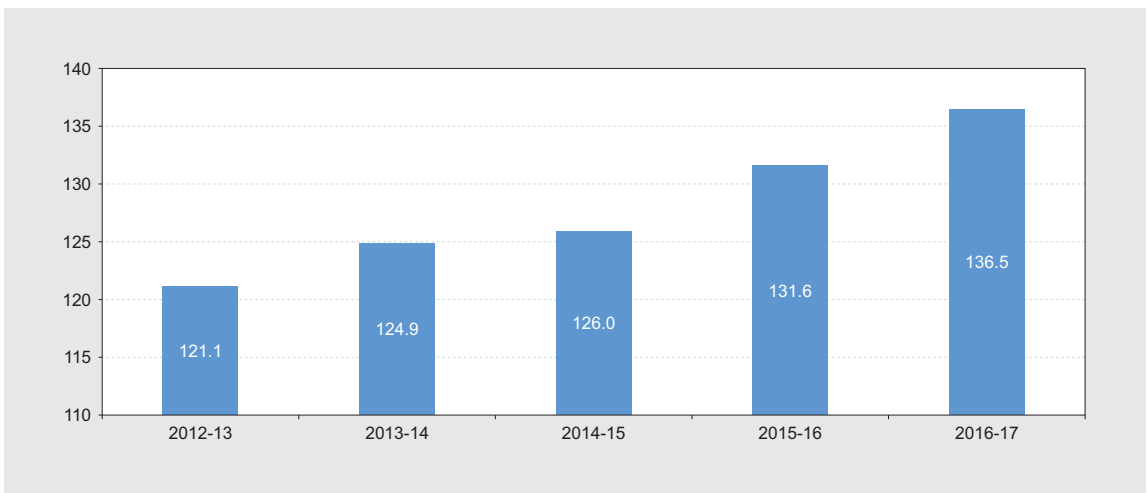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해란 연구원〉

## 캐나다

- 의회예산처(PBO), FY2016-17 2분기 지출모니터링 보고서 발표(2017.1.10.)<sup>3)</sup>
  - FY2016-17 상반기 정부총지출은 1,365억캐나다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 이는 예산상 지출 증가율인 5.6%보다 적은 규

[그림 1] 매 회계연도 상반기 정부 총지출 추이

(단위: 십억달러)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Expenditure Monitor 2016-2017 Q2

3)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http://www.pbo-dpb.gc.ca/web/default/files/Documents/Reports/2017/Expenditure%20Monitor%202016-17%20Q2/Expenditure%20Monitor%202016-17%20Q2.pdf>



모로, 신규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정부의 경제 우선순위 이행의 지연에 기인

- 상반기 내에 인프라 지출에 대한 정부의 계획된 투자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인프라 이전도 전년 대비 감소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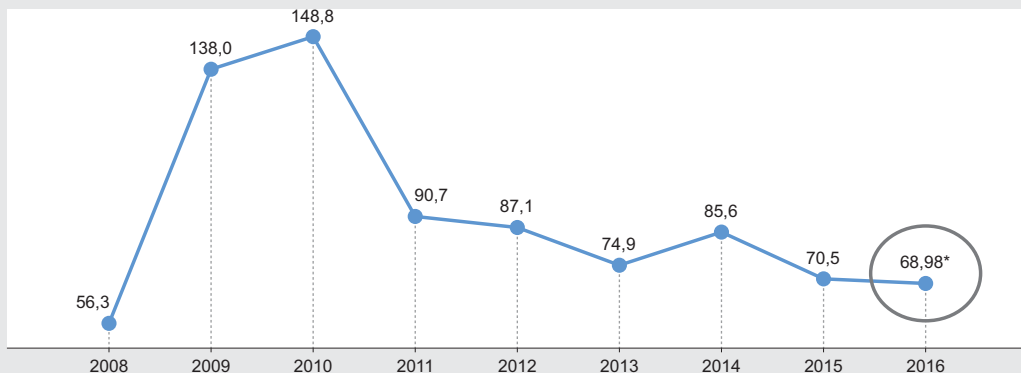
- 재무부, FY2016 재정 잠정집계 결과 발표(2017.1.17.)<sup>4)</sup>
  - 프랑스는 엄격한 재정 관리로 2016년 공공계정의 회복이 지속되었으며, 정책우선순위 분야인 보안과 고용 부문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어 연중 적절

히 대응함

- 2016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5억유로 감소한 689억 8천만유로로 2016년 본예산(723억유로) 및 수정예산안(699억유로) 전망치를 모두 하회하며 2008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6년 3.3%이며, 2017년까지 3% 이하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
- 연금과 이자비용을 제외한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28억유로 감소한 2,948억유로,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29억유로 감소한 3,822억유로로 지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재정수입은 2016년 본예산 전망치(3,035억유로)와 동일

[그림 2] 2016년 재정집행 결과

(단위: 십억유로)



출처: Communiqué de presse(2017.1.17.)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터 연구원〉

4)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sapin-eckert-budget-deficit-budgetaire-2016>

독일

## 1. 예산 · 결산 등

- 연방재무부, FY2016 잠정결산 발표(2017.1.12.)<sup>5)</sup>
  - (재정지출) 2016년 재정지출은 3,112억유로로 기준 지출목표 대비 57억유로 감소
  - (재정수입)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3,174억유로 집계, 이는 목표 대비 5억유로 높은 수치이며 재정지출 대비 62억유로 높게 기록
  - 난민관련 지원을 위해 90억유로의 추가 지원 예상

〈표 3〉 FY2016 결산(잠정)

(단위: 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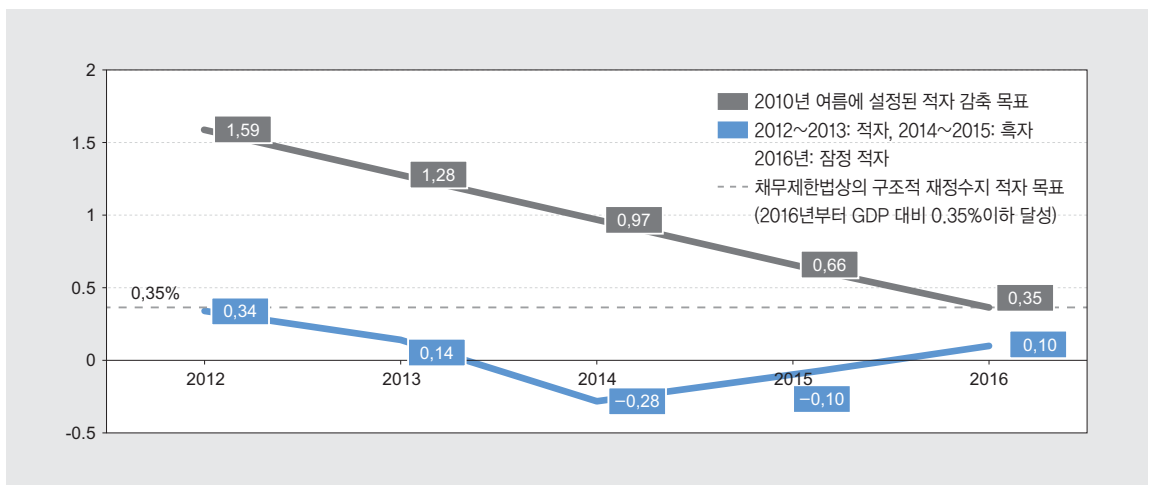
|      | 2016목표 | 2016잠정 | 목표치 대비 차이 |
|------|--------|--------|-----------|
| 재정지출 | 3,169  | 3,112  | -57       |
| 재정수입 | 3,169  | 3,174  | 5         |
| 조세수입 | 2,881  | 2,890  | 9         |
| 세외수입 | 227    | 285    | 57        |
| 예비비  | 61     | 0      | -61       |
| 신규차입 | 0      | 0      | -         |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2016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적자를 기록, 이는 채무제한법상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목표<sup>6)</sup> 대비 0.25%p 높은 수치
- 최종 결산보고서는 6월 발표 예정

[그림 3]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2016

5) 연방 재무부(2017.1.12.):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7/01/2017-01-12-pm02.html>  
 6) Schuldenbremse(Debt Brake):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정부에 대해서는 2020년에 구조적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함(참고: 정책분석 14-03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 161.)



## 2. 기타

- 연방 통계청, 2016년 1-3분기 재정수지 발표(2016. 12.29.)<sup>7)</sup>
  - 2016년 1~9월의 재정수지 적자가 1억유로로 집계, 2015년 같은 시기 대비 25억유로 하락
    - 국가전체 재정수입은 9,795억유로로 전년도 대비 3.5% 증가했으며, 재정지출은 9,796억유

로로 3.7% 증가

-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7억유로로 2015년 대비 56억유로 하락한 반면 주정부는 57억유로의 흑자 달성
- 사회보험 재정흑자는 89억유로 증가한 22억유로로 집계

〈표 4〉 2016년 1-3분기 재정수지

(단위: 억유로)

|      |      | 전체    | 연방정부  | 주정부   | 기초 자치단체 | 사회보험  |
|------|------|-------|-------|-------|---------|-------|
| 재정지출 | 2016 | 9,796 | 2,715 | 2,691 | 1,737   | 4,450 |
|      | 2015 | 9,442 | 2,584 | 2,591 | 1,618   | 4,302 |
| 재정수입 | 2016 | 9,795 | 2,708 | 2,747 | 1,708   | 4,428 |
|      | 2015 | 9,466 | 2,633 | 2,631 | 1,619   | 4,235 |
| 재정수지 | 2016 | -1    | -7    | 57    | -29     | 22    |
|      | 2015 | 24    | 49    | 41    | 1       | -67   |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2016.12.29.)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 일본

- FY2017 정부예산안 발표(2016.12.22.)<sup>8)</sup>
  - (주요내용) 2017년 예산은 「경제·재정재생계획」 2년차 예산으로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FY2017 세출총액 97조 4,547 억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
    - 〈경제활성화〉
      - ‘1억총활약사회’를 실현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

순환을 강화

- ☞ 보육교사·간병인 등의 처우개선, 보육시설 대기아동 해소, 연금 수급자격기간단축,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고용보험료의 경감, 급부형 장학금 신설 등을 추진
- ☞ (보육교사·간병인 처우개선) 모든 보육직원을 대상으로 2%의 임금인상을 통해 2013년 이후 총 10%의 개선을 시행

7) 출처: 연방통계청(2016.12.29.)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6/12/PD16\\_476\\_7113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6/12/PD16_476_71131.html)

8) 재무성, 「平成29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6.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fuan29/01.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fuan29/01.pdf)



- ☞ (연금) 연금수령수급 자격기간을 기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 ☞ (교육) 급부형장학금을 2018년도부터 신설해 최소 월 3만엔 지급(70억엔), 저소득가구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무이자장학금의 성적기준을 실질적으로 철폐해 지급(885억엔)
  -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방안을 추진
    - ☞ 경제성장을 높이는 대책에 중점을 뒀 과학기술진흥비의 확대,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 공공사업관계비 중 성장분야에 중점화를 추진
  - 업무방식 개혁추진
    - ☞ 임금인상 환경정비를 위한 평가제도를 갖추고 임금인상에 참여하는 기업구조마련(39억엔)
    - ☞ 근무후식기간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4억엔)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670억엔)
- 〈재정전전화〉
- 일반세출 증가를 2년 연속 '경제 · 재정재생계획' 기준에 따라 5,300억엔으로 억제해 편성
    - ☞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관계비의 증가를 5,000억엔으로 억제
    - ☞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급여의 적정화로 고액요양비, 고액개호(간호,간병)서비스비의 재검토
    - ☞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경감특례의 재검토, 개호납부금의 총보수비율의 도입 등의 개혁을 추진
  - 신규 국채발행액은 현재 34,4조엔에서 지속적
- 으로 감축 노력
- (세입 · 세출) FY2017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97조 4,547억엔으로 편성, 일반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58조 3,591억엔으로 편성
  - FY2017 분야별 세출내역의 특징
    - (사회보장관계비) 「경제 · 재정 재생계획」 기준에 따라 증가액을 전년 대비 4,997억엔으로 제한해 32조 4,735억엔 편성
    - (과학기술진흥비) 민간투자를 이끌어 경제성장력을 높이는 연구개발에 중점배분하면서 과학기술진흥에 전년 대비 0.9% 증가한 1조 3,045억엔 편성
    - (공공사업관계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5조 9,737억엔
      - ☞ 호우 · 태풍재 대비한 방재대책,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성장력을 높이는 사업의 중점화 추진
      - ☞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공공투자의 시기를 평준화하면서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향상



〈표 5〉 FY2017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

| 구분              | FY2016(당초) | FY2017 예산 | 증감액    | 증감률  |
|-----------------|------------|-----------|--------|------|
| [세입]            |            |           |        |      |
| 1. 조세 및 인지수입    | 576,040    | 577,120   | 1,080  | 0.2  |
| 2. 기타 수입        | 46,858     | 53,729    | 6,871  | 14.7 |
| 3. 국채발행         | 344,320    | 343,698   | 622    | △0.2 |
| (1) 공채금(건설국채)   | 60,500     | 60,970    | 470    | 0.8  |
| (2) 특례공채금(적자국채) | 283,820    | 282,728   | △1,092 | 0.4  |
| 합계              | 967,218    | 974,547   | 7,329  | 0.4  |
| [세출]            |            |           |        |      |
| 1. 국채비          | 236,121    | 235,285   | △836   | △0.4 |
| 2. 일반세출         | 578,286    | 583,591   | 5,305  | 0.9  |
| 3.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 152,811    | 155,671   | 2,860  | 1.9  |
| 합계              | 967,218    | 974,547   | 7,329  | 0.8  |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국채의존도 35.3%(2016년 당초 35.6%).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3.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은 지방세수 증가 등을 반영

출처: 재무성, 「平成29年度予算フレーム」, 2016.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tuan29/01.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tuan29/01.pdf)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tuan29/04.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tuan29/04.pdf)

〈표 6〉 FY2017 채무상황

(단위: 억엔, %)

| 구분              | FY2015 | FY20 16 | FY2017 |
|-----------------|--------|---------|--------|
| 공채잔액(일반국채 잔액)   | 805    | 845     | 865    |
| GDP 대비 %        | 151    | 156     | 156    |
| 중앙 및 지방 장기채무 잔고 | 1,033  | 1,073   | 1,094  |
| GDP 대비 %        | 194    | 199     | 198    |

주: GDP는 2015년도는 실적, 2016년 및 2017년도는 전망치

출처: 재무성, 「平成29年度予算フレーム」, 2016.12.22.

〈표 7〉 FY2017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단위: 억엔, %)

| 구분         | FY2016   | FY2017   | 증감액   | 증감률   |
|------------|----------|----------|-------|-------|
|            | (A)      | (B)      | (B-A) | (%)   |
| 국채비        | 236,121  | 235,285  | △836  | △0.4  |
| 일반세출       | 578,286  | 583,591  | 5,305 | 0.9   |
| 사회보장관계비    | 319,738  | 324,735  | 4,997 | 1.6   |
| 문교 및 과학진흥비 | 53,580   | 53,567   | △13   | △0.0  |
| 과학기술진흥비    | (12,930) | (13,045) | (116) | 0.9   |
| 국채비        | 236,121  | 235,285  | △836  | △0.4  |
| 연금관계비      | 3,421    | 2,947    | △474  | △13.9 |
| 방위관계비      | 50,541   | 51,251   | 710   | 1.4   |
| 공공사업관계비    | 59,737   | 59,763   | 26    | 0.0   |
| 경제협력비      | 5,161    | 5,110    | △51   | △1.0  |
| 중소기업산업대책비  | 1,825    | 1,810    | △14   | △0.8  |
| 에너지대책비     | 9,308    | 9,635    | 327   | 3.5   |
| 식료안정공급관계비  | 10,282   | 10,174   | △108  | △1.0  |
| 기타 경비      | 61,193   | 61,098   | △95   | △0.2  |
| 예비비        | 3,500    | 3,500    | -     | -     |
| 지방교부세교부금   | 152,811  | 15,5671  | 2,860 | 1.9   |
| 합계         | 967,218  | 974,547  | 7,329 | 0.8   |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재무성, 「平成29年度一般会計歳出概算主要経費別内訳」, 2016.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fuan29/01.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fuan29/01.pdf)

〈표 8〉 FY2017 경제지표

(단위: 조엔, %)

| 구분           | FY2012(실적) | FY2013(실적) | FY2014(실적) | FY2015(실적) | FY2016(실적전망) | FY2017(전망) |
|--------------|------------|------------|------------|------------|--------------|------------|
| 명목GDP 성장률    | 0.2        | 2.6        | 2.1(0.7)   | 2.8        | 1.5          | 2.5        |
| 명목GDP        | 494.7      | 507.4      | 517.9      | 532.2      | 540.2        | 553.5      |
| 실질GDP 성장률    | 0.9        | 2.6        | -0.4       | 1.3        | 1.3          | 1.5        |
|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 -0.3       | 0.9        | 2.9(0.9)   | 0.2        | 0.0          | 1.1        |
| 완전실업률        | 4.3        | 3.9        | 3.5        | 3.3        | 3.1          | 2.9        |

주: 1. 2016년도 및 2017년도는 「FY2017년도 경제 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자세」(2016년 1월 20일 각료회의 승인)에 따름  
2. 2014년도 명목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의 괄호안의 계수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 제외한 계수  
출처: 재무성, 「平成29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6.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fuan29/01.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fuan29/01.pdf)



■ 재무부, 재해대응 및 안보강화를 위한 FY2016 제 3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2016.12.22.)<sup>9)</sup>

• 일본정부는 건설국채 및 특별국채 등을 재원으로, 2천억엔 규모로 추경편성(2016.12.22.)

※ 1차추경(5.17)은 구마모토 지진 복구자원을 위해 7,780억 엔, 2차추경(8.24)은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해 4조 5,221억엔을 편성

- (재해대책비) 8월 말에 발생한 홋카이도 태풍 재해 등에 대한 대응 및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재해 폐기물 처리비용의 부족분 등으로 1,955억엔 편성

- (국제기구분담금) 유엔PKO 분담금과 중동의 테러·사회안정지원 등 난민 지원에 1,685억엔 편성

〈표 9〉 FY2016 일반회계 추경예산 프레임

(단위: 억엔)

| 세출                                  |        | 세입           |         |
|-------------------------------------|--------|--------------|---------|
| 1. 재해대책비                            | 1,955  | 1. 세외수입      | 1,047   |
| <후카이도 동북 호우·태풍 재해 복구>               |        | 2. 공채금(건설국채) | 1,014   |
| 공공 토목시설 등의 재해복구                     | 1093   | 3. 세수        | △17,440 |
| 출하장, 축사, 하우스 등의 재건지원                | 61     | 4. 공채금(특별국채) | 17,512  |
| <구마모토 지진 복구>                        |        |              |         |
| 재해 등 폐기물 처리                         | 281    |              |         |
| 보조금                                 | 183    |              |         |
| 2. 국제분담금 및 출연금 등                    | 1,685  |              |         |
| 3. 자위대의 안정적인 운용태세 확보 등              | 1,706  |              |         |
| 4. 기타경비                             | 879    |              |         |
| 세 출 소 계                             | 6,225  |              |         |
| 5. 지방교부세교부금                         | 5,437  |              |         |
| (1) 세수감소에 따른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의 보전 | 5,365  |              |         |
| (2) 지방법인세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财源의 감액 보전   | 72     |              |         |
| 6. 지정경비 감액                          | △3,501 |              |         |
| 7. 구마모토 지진복구 등 예비비의 감액              | △163   |              |         |
| 8. 예비비의 감액                          | △500   |              |         |
| 9. 지방교부금교부세의 감액                     | △5,365 |              |         |
| 합계                                  | 2,133  |              | 2,133   |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재무성, 「平成28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3号)等について」, 2016.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sy280513/hosei281222b.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sy280513/hosei281222b.pdf)

9) 재무성, 「平成28年度補正予算(第3号)」, 2016.12.22.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hosei1222.html](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hosei1222.html)

– (방위비)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과 경제 감시태세 강화 등 자위대의 안정적인 운용태세 확보를 위해 1,706억엔 편성

☞ 초계기, 잠수함 등의 구매에 1,131억엔, 장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리비 등에 464억엔 편성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 영국

■ 통계청, 2016년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발표 (2016.12.23.)<sup>10)</sup>

- 2016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0.6%로, 서비스 및 금융 부분의 산출 증가로 11월 발표된 잠정치(0.5%) 대비 0.1%p 상향 조정
- 2013년 1분기 이후 15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2%로 나타남

〈표 10〉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           | 2014 |     | 2015 |     |     |     | 2016 |     |     |
|-----------|------|-----|------|-----|-----|-----|------|-----|-----|
|           | Q3   | Q4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 실질GDP 성장률 | 0.8  | 0.8 | 0.3  | 0.5 | 0.3 | 0.7 | 0.3  | 0.6 | 0.6 |

출처: 영국 통계청 보도자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 미국

### 1. 예산 · 결산 등

■ 미 재무부 산하 금융관리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 FY2016(2015.10월~2016.9월) 결산보고서 발표(2017.1.12.)<sup>11)</sup>

-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485억달러(약 33.8%) 증가한 5,874억달러, 순 운영비용은 5,332억달러 증가(103.7%)한 1조달러를 기록(세출: 1,665억달러 증가, 세입: 180억달러 증가)

– FY2015의 순 운영비용과 현금주의 재정적자는 약 4,600억달러의 차이를 보임

\*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관련 비용(federal employee & veteran benefits liabilities), 기타 특정 부채(certain other liabilities)가 순 운영비용에는 포함되고 재정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음

- 2016.9.30. 기준 연방정부 소유 자산은 약 3조 5천억달러, 총 부채는 22조 8천억달러

※ 학자금 대출채권(1.3조달러)이 총 자산의 37%, 유형자산(PP&E)(9,795억달러)이 28%를 구성부채는 비정부부문 소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sup>12)</sup> 및 미지급이자를 합한 14조 2천억달러,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7조 2천억달러, 기타(1조 3천억달러)로 구성

10) 출처: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quarterlynationalaccounts/quarter3julytosept2016/pdf>

11) FY2016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ttps://www.fiscal.treasury.gov/isreports/rpt/fir/fir/f16frusg/01112017FR\\_\(Final\).pdf](https://www.fiscal.treasury.gov/isreports/rpt/fir/fir/f16frusg/01112017FR_(Final).pdf)

12) 'public'은 개인, 기업, 주 및 지방정부, 연방준비은행(FRB), 외국 정부 등 비정부부문(outside the federal government)을 뜻하는 개념



〈표 11〉 순 운영비용(발생주의)과 재정적자(현금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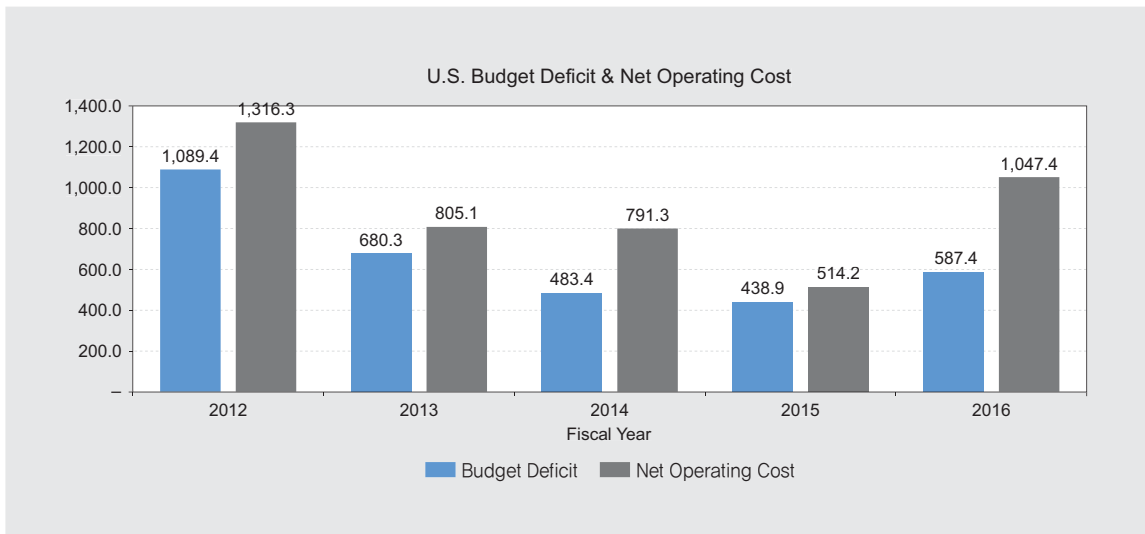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 구 분                                                                | 15    | 16      | 증감    |
|--------------------------------------------------------------------|-------|---------|-------|
| 순 운영비용(net operating cost) ①                                       | 514.2 | 1,047.4 | 533.2 |
|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②                    | 99.8  | 437.0   | 337.2 |
| Environmental and Disposal Liabilities ③                           | 42.5  | 35.0    | -7.5  |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④                              | -47.0 | -54.2   | -7.2  |
| Yearend Upward/(Downward) Credit Reform Subsidy Reestimates, Net ⑤ | -22.0 | 22.2    | 0.2   |
| Other, Net ⑥                                                       | 2.0   | 20.0    | 18.0  |
| SubtotalNet Difference ⑦=②+③+④+⑤+⑥                                 | 75.3  | 460.0   | 384.7 |
| 현금주의 재정적자(budget deficit) ①-⑦                                      | 438.9 | 587.4   | 148.5 |

출처: 미 재무부, FY2016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17.1.12.

[그림 4] FY2016 미국 재정적자와 순 운영비용 추이

(단위: 십억달러)



출처: 미 재무부, FY2016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17.1.12.

■ CBO, FY2017 1분기 재정집행 잠정 실적 발표<sup>13)</sup>  
(2017.1.9.)

• 1분기 총 누적(2016.10.1.~2016.12.31.) 재정적자는 2,07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0억달러 감소하였고, 세입 · 세출 모두 전년(FY) 동기 대비 각각 250억달러, 340억달러 감소

– (세입) 총 7,40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250억달러 감소

\* 개인 소득세와 사회보험세(payroll (social insurance) taxes)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총 120억달러 증가

– (세출) 총 9,48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340억달러 감소

\* 메디케이드(+50억달러), 메디케어(+70억달러) 및 사회보장지급금(+60억달러) 등의 의무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80억달러 증가

〈표 12〉 FY2017 1분기 재정 잠정 결산

(단위: 십억달러)

| 구 분  | FY 2016 1분기<br>(A) | FY 2017 1분기<br>(B) | 증가<br>(B-A) |
|------|--------------------|--------------------|-------------|
| 재정수입 | 766                | 740                | -25         |
| 재정지출 | 981                | 948                | -34         |
| 재정적자 | -216               | -207               | 8           |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for December 2016," January 9, 2017.

## 2. 기타

■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sup>14)</sup>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로 인한 비용 분석 발표(2017.1.4.)<sup>15)</sup>

•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경우 향후 10년간(~2027년) 총 3,500억달러의 비용 전망

– (보험 범위(coverage provisions) 조항 폐지) 개인 및 사업주의 의무가입(individual and employer mandates)조항, 주정부 보조금(exchange subsidies) 조항 및 기타 조항 등을 폐지할 경우 총 1조 5,500억달러 절감 전망

\* 현재(FY2015 실적 기준) 채무 규모: 13조 1,170억달러, GDP 대비 73.7%

– (세입 조항 폐지) 2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금(medicare payroll surtax) 폐지,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폐지 및 고액의 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캐딜락세(cadillac tax) 등의 폐지로 인해 총 8천억달러 비용 전망

– (메디케어 조항 폐지) 메디케어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 감축 폐지, 메디케어 수가제(fee-for-service) 감축 폐지 등으로 인해 1조 1천억달러 비용 전망

〈표 13〉 오바마 케어 전면 폐지로 인한 예산 영향

(단위: 십억달러)

| 구 분                                             | 2018~2027<br>비용/편익(-) 분석 |
|-------------------------------------------------|--------------------------|
| 보험범위 조항(coverage provisions) 폐지                 | -1,550                   |
| 세입 조항(revenue provisions) 폐지                    | 800                      |
| 메디케어 조항<br>(medicare and related provisions) 폐지 | 1,100                    |
| 총 비용                                            | 350                      |

출처: CRFB, "The cost of Full Repeal of the Affordable Care Act," Jan 4, 2017.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13)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5th-congress-2017-2018/reports/52362-mbr.pdf>

14)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15) <http://crrb.org/papers/cost-full-repeal-affordable-care-act>



# | 정책 흐름 |

-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추진
-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추진

\* 본 자료는 2017년 2월 3일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분석과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도 급감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

| 구분              | 내용             |                |                      |               |                  |               |
|-----------------|----------------|----------------|----------------------|---------------|------------------|---------------|
| 출산율(%)          | ('01)<br>1.29  | ('05)<br>1.08  | ('10)<br>1.23        | ('13)<br>1.19 | ('14)<br>1.21    | ('15)<br>1.24 |
| 출생아수(천명)        | ('14)<br>435.4 | ('15)<br>438.4 | ('16.1~'11)<br>379.3 |               | ('16.11)<br>30.3 |               |
| 증감률(% , 전년 동기비) | -0.2           | 0.7            | -6.7                 |               | -9.6             |               |

- 이에 기획재정부는 '17년 경제정책방향에 기 발표한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중 '16년 저출산 지원 대상사업(약 21.4조원 규모): 청년일자리·주거, 출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4대 분야

- 기획재정부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2.3.(금)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출산율 제고 등 효과는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며,

\* 제1차 기본계획('06~'10): 19.7조원, 제2차 기본계획('11~'15): 60.5조원

-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 주기에 맞추어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

- 특히 이번 심층평가에서는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 저출산 지원 예산의 약 74%(15.8조)가 돌봄·교육에 집중

-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청년일자리·주거 분야 과제 등의 경우에는 저출산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자원배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

- 동 심층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PM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을 연구 총괄 기관으로 선정,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상반기 중에 우선 도출하여 '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본 자료는 2017년 2월 3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5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인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부처협의(2.6~2.20, 14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2.24) 예정

첨부 '16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 I. 주요 개정내용

-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조특규칙 §13의6)

**【시행령 개정내용】** 공제대상 영상제작자·영상콘텐츠·제작비용 등 규정 → 공제대상 영상제작자의 요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작비용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조특령 §22의6)

| 구 분        | 개정안                                                                                                                                                                                                                                                                                                                                                                                       |
|------------|-------------------------------------------------------------------------------------------------------------------------------------------------------------------------------------------------------------------------------------------------------------------------------------------------------------------------------------------------------------------------------------------|
| 공제대상 영상제작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인 제작을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li> <li>②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li> <li>③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li> <li>④ 제작비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9의2 제작인정기준 참조</li> </ul> </li> </ol> </li> </ul> |
| 공제대상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 등 원자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li> </ul>                                                                                                                                                                                                                                                                 |
| 제외되는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li> <li>• 영상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출연료 등</li> </ul>                                                                                                                                                                                                                                                               |

## 2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시설(조특규칙 §13의5)

【시행령 개정내용】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의 대상시설, 판정방법 등 규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별 구체적 대상시설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조특령 §22의6)

- **(대상시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별표로 규정하는 시설\*

\* 자율주행차량탐재용 센서 제작시설, 혁신형 신약 제조시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로 사업화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예시

| 구 분              | 사업화 시설 예시                                                                                                                                                                                          |
|------------------|----------------------------------------------------------------------------------------------------------------------------------------------------------------------------------------------------|
| 1. 미래형 자동차       | 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탐재용 센서 등 제작 시설<br>②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킨 이차전지 생산 시설<br>③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등 제작 시설                                                                            |
| 2. 지능 정보         | ① 스마트 착용형기기에 사용되는 신체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 시설<br>② 장소에 구애없이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전자항행기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 시설                                                |
| 3.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 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 시설<br>② AMOLED 부품·소재·장비 등 제조 시설<br>③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공정별 부품·소재 장비 제조 시설                                                                                                  |
| 4. 차세대 방송 통신     | ① 고효율 지상파 UHD 방송용 송신기 제조 시설                                                                                                                                                                        |
| 5. 바이오·헬스        | ①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백신, 혁신형 신약 등 제조 시설<br>②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 RNA, 염색체 등을 추출·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 제조 시설                                                                                   |
| 6. 에너지 신산업·환경    | 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집합체, 금속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시설<br>②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폐기물의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한 연료유 또는 가스 생산 시설<br>③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등을 생산하는 시설 |
| 7. 융복합 소재        | ①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탄소나노튜브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고탄성·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시설<br>② 고강성·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시설<br>③ 난삭 매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 가공을 위한 고강성·고정밀 가공장비 제조 시설                                            |
| 8. 로봇            | ① 농업, 건설, 물류, 보안·감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제조 시설<br>② 수술·진단·재활 로봇, 간병·케어 로봇, 안내·통역·매장서비스·홈서비스 등 안내 로봇, 생활도우미 로봇, 교육로봇 등 제조 시설                                                             |
| 9. 항공·우주         | 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 제조 시설<br>②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방송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등 제조 시설                                                    |

주: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등 2개 분야는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어 제외

3

신성장산업 외투자원\*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 신설(조특규칙 §51의2)

**【시행령 개정내용】**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 신설 → 최소 투자금액을 시행규칙에 위임(조특령 §116의2①)

- **(신설)** 신성장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다른 외투감면 제도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투자금액을 2백만달러로 규정

\* 유사한 감면제도인 신성장산업기술 R&D 시설투자의 지원요건 수준 (2백만달러)으로 설정

4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관련 세부사항(소득규칙 §12의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일시납 및 월 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 등 규정 → 월 적립식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 및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소득령 §25)

-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 사망 · 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순수보장성보험)

\* 저축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단기납입 · 장기보장)으로 중도해지 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법)**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

\*  $\frac{\text{해당연도의 납입보험료의 합}}{\text{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leq 150\text{만원}$

–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

을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

\* 기본보험료 100만원 12개월 납입, 200만원 추가납입 (총 1,400만원) → 비과세

5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규칙 §19의3, 부가규칙 §47, 법인규칙 §6, 소득규칙 §23 · §57, 환특규칙 §16)

- **(현행)** 다음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1.8%

① 국세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②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 **(개정)**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1.6%로 인하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14) 2.5 → ('15) 1.8 → ('16) 1.6

- **(적용시기)**

①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국세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② ('17.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기 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6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 조정(상증규칙 §19의2)

- **(현행)**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 3.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 10%

\*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예: 연금)

\*\*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신탁재산의 원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 **(개정)**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정  
기금 평가시의 이자율을 3.0%로 인하  
- 아울러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  
한 점을 고려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  
가시 적용 이자율을 3.0%로 인하  
\* [계산사례] 현재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하여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후 원본 10억  
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현행) 5.7억  
원 → (개정) 10억원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  
여받는 분부터 적용

## II. 기타 개정내용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임  
대시 세액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조특규  
칙 §5의2)

**【시행령 개정내용】**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  
과 연계하여 무상 임대시 세액공제(3%) 대상인  
유형고정자산(연구·시험용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조특령 §7의2⑥)

- **(신설)** 무상 임대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는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조특법상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연구·시험용 설비(조  
특규칙 §8① 제1호)를 준용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보강설비(조특  
규칙 별표 8의7)

**【시행령 개정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조특령 §22①12  
호)

- **(신설)** 강도 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한 내진보강설비

### 내진보강설비 범위 예시

| 구 분        | 내진보강 범위                                |
|------------|----------------------------------------|
| 1. 강도 보강   | 내진벽 증설, 날개벽 증설, 버트리스 골조 증축,<br>가새 증설 등 |
| 2. 연성 보강   | 기둥 보강, 보 보강, 접합부 보강, 부재 변형 등           |
| 3. 지진력의 저감 | 중량 저감, 지진응답 저감 등                       |

-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사  
의 감정가액도 인정(조특규칙 §15)
  - **(현행)**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 당시 실  
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  
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및 중소기업 간 통합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해당 자산의 실  
제 양도시점에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
  - **(개정)**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취득  
가액으로 인정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통합·법인전환하는 분  
부터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  
과보상기금납입비용”요건 보완(조특규칙 §7)
  - **(현행)**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

채움공제\*) 납입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근로자:기업=1:2 이상)  
후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납입액 전액과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

- **(개정)** 다음의 납입비용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①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 등)에 대한 납입비용
  - ②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금액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납입하거나 환수하는 분부터 적용

##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 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 확대(법인규칙§41)
  - ①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해 분할·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 **(현행)** 법인이 분할·현물출자 시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
- **(개정)** 해외자회사의 국내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코스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코스닥) 등 설립을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이연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 ② 법인분할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 확대
- **(현행)** 법인 분할시 주식승계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주식의 승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 **(개정)**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 승계

시에도 과세이연 허용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법인규칙 §27의2)

**[시행령 개정내용]**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렌터카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렌터카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법인령 §50의2)

- **(신설)**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렌터카의 범위를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규정

-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법인규칙 §10의5)

**[시행령 개정내용]**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산입을 허용→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행한 채무보증도 포함(법인령 §19의2)

- **(신설)** 건설회사가 다음의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산입을 허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동화와 직접 관련하여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

-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재산평가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 구체화(상증규칙 §15의2)

【시행령 내용】「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 시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 재산\* 평가액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상증령 §49)

\*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 (신설) 공동주택으로서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
  -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
  -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pm 5\%$  이내인 주택
  -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pm 5\%$  이내인 주택

###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세부사항 신설(국조규칙 §6의2)

【시행령 개정내용】국가별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국조령 §21의2)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에 대해 작성

- (제출 내용) 「국가별보고서」 서식\* 신설(작성범위 규정은 고시로 위임)

\* OECD 표준서식 반영(국가별 매출, 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법인명, 납세자번호, 소재지, 주요 사업활동 등 포함)

- (제출 절차)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를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

\* 보고서 제출의무자와 소속 자회사의 법인명, 소재지, 제출 국가명 등을 포함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 신설(국조규칙 §2의2)

【시행령 개정내용】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은 시행규칙에 위임(국조령 §6⑦)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간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로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대여거래의 경우) 법인규칙 §43②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국내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되는 이자율(4.6%)

- (차입거래의 경우) 자금대여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자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리보금리\*에 가산금리(1.5%)를 더한 이자율

\* 리보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 달러화의 12개월 만기 리보금리 사용

##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본 자료는 2017년 1월 31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지난 '16.12.2(금)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6.12.27.)한 바 있으며
    - 그간 법제처 심사(12.29.~1.19.), 입법예고(12.29.~1.19.) 및 부처협의(12.29.~1.9.)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함
    -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초 공포 예정임
- \* (18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인지세법」·「주세법」·「교육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사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별첨 2016년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

####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조특령 별표7)

| 당초안                                                                                                                                                                                                                                                                                                                                                                                                                                                                                                                                  | 수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R&amp;D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통합하여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로 조정</li> <li>* ① 미래형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지능정보,</li> <li>③ 차세대 SW 및 보안,</li> <li>④ 콘텐츠,</li> <li>⑤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li> <li>⑥ 차세대 방송통신,</li> <li>⑦ 바이오·헬스,</li> <li>⑧ 에너지신산업·환경,</li> <li>⑨ 융복합소재,</li> <li>⑩ 로봇,</li> <li>⑪ 항공·우주</li> </ul> </li> <li>〈추 가〉</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술 추가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기술 추가</li> </ul> </li> </ul> <div style="margin-top: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li> <li>②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li> <li>③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li> </ul> </div> |

#### <수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 ②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 조정(소득령 §25)

| 당초안                                                                                                                                                                                                         | 수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li> <li>* (일시납 보험)</li> <li>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원 →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보험)</li> <li>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li> <li>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시기 조정</li> <li>* '17.4.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li> </ul> |

### <수정이유> 준비기간 부여

## ③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단계적 시행 (상증령 §54①)

| 당초안                                                                                                                                                                       | 수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li> <li>* Max[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치 (3:2), 순자산가치의 80%]</li> <li>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시기: '17.4.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li> <li>하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4.1~'18.3.31: 순자산가치의 70%</li> <li>- '18.3.31 이후: 순자산가치의 80%</li> </ul> </li> </ul> |

### <수정이유> 단계적 시행

##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조특령 §116의25①)

| 현행(개정안 없음)                                                                                                                                                                                                                                                                                                                                                                                               | 수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산업(영화, 음악, 게임, 방송영상, 출판인쇄 등)</li> <li>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연수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이상)</li> </ul> </li> <li>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간 100%, 2년간 50% 감면</li> </ul> </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산업중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 (총사업비 5억원이상)</li> <li>*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li> <li>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연수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이상)</li> </ul> </li> <li>(좌 동)</li> </ul> </li> </ul> |

### <수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 산업 입주기업 지원

## 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추가의 시행시기 조정(소득령 부칙 §1, §14)

| 당초안                                                                                                                                                                                                                                                                                        | 수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업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6개*(52개 → 58개)</li> <li>*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li> <li>(시행시기) '17.7.1일</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시기 조정</li> <li>(좌 동)</li> <li>(시행시기) '17.7.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19.1.1일</li> </ul> </li> </ul> |

### <수정이유>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해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

# 재정포럼

2017년 2월호 통권 제248호

- 발 행 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 행 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김준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 월간 재정포럼

2017년 2월 15일 발행 / 제21권 제2호(통권 제24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 인 쇄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지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 금 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